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운영지침

개정판

2021.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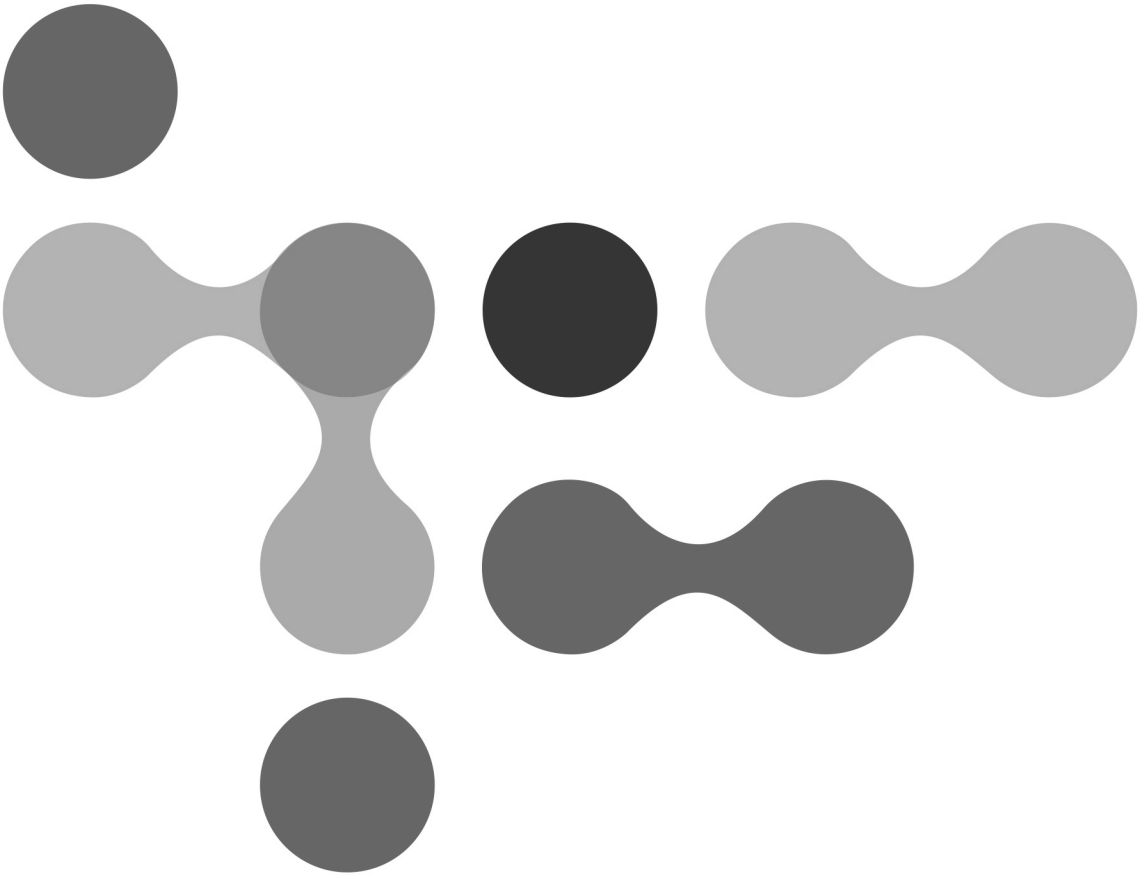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차례 C/O/N/T/E/N/T/S

주요 개정사항

제1장 시범사업 개요 ····· 1

1. 추진 배경 ····· 2
   가. 응급실을 통한 자살시도자 개입 필요 ····· 2
   나.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실시 ····· 2
   다.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 ····· 3
2. 사업목적 및 추진 방향 ····· 3
   가. 사업목적 ····· 3
   나. 추진 방향 ····· 3
3. 추진 근거 ····· 4

제2장 시범사업 주요 내용 ····· 5

1. 사업내용 ····· 6
   가. 추진모형 ····· 6
   나. 사업대상 ····· 7
   다. 서비스 제공인력 ····· 7
   라. 사업 기간 ····· 8
   마. 운영체계 ····· 8
2. 사후관리 서비스 내용 ····· 9
   가. 시범 기관별 제공 서비스 ····· 9
3.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업무 정의 ····· 11

제3장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 13

1. 요양급여 기준 ····· 14
   가. 요양급여 대상 ····· 14
   나. 급여 범위 및 비용부담 ····· 14

2. 산정지침 ····· 15
가. 일반원칙 ····· 15
나. 의뢰환자관리료 ····· 16
다. 심층평가료 ····· 16
라. 사례관리 계획수립료 ····· 17
마. 자살시도자 응급관찰 관리료 ····· 17
3.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18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19
가. 청구원칙 ····· 19
나. 명세서 작성요령 ····· 20
다. 특정내역 구분 코드 작성요령 ····· 23
라. 보완 및 추가청구 ····· 24

제4장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스템(SPEDIS) ····· 25
1. 시스템 개요 ····· 26
가. 시스템 이용 ····· 26
2. 이용 방법 ····· 27
가. 이용자 사전신청 : 모든 사용자 ····· 27
나. 일반응급의료기관 ····· 30
다. (거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 40

제5장 시범사업 준수사항 등 ····· 57
1. 시범 기관 준수사항 ····· 58
가. 요양급여 안내 ····· 58
나. 자료제출의 의무 ····· 58
다. 연구과제 참여 협조 의무 ····· 58
라.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요구 및 보관 ····· 59
마. 제재조치 등 ····· 59

차례 C/O/N/T/E/N/T/S

2. 시범 기관 평가 ····· 59
가. 평가 개요 ····· 59
나. 평가 내용 ····· 60
다. 평가 방법 ····· 60
라. 평가 관련 자료제출 ····· 60

제6장 별지서식 모음 ····· 61

[별첨]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 77
1. 사업대상 및 시범 기관 ····· 78
2.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 ····· 80
가. 공통 사항 ····· 80
나. 의뢰환자관리료 ····· 83
다. 심층평가료 ····· 85
라. 사례관리 계획수립료 ····· 86
마. 자살시도자 응급관찰 관리료 ····· 87
3. 청구방법 ····· 89
4.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스템(SPEDIS) ····· 92
5. 기타사항 ····· 94

주요 개정사항

개정 전(2021. 3. 29)	개정 후(2021. 8. 1)	page
제3장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나. 명세서 작성요령 3) 진료내역 (의뢰환자관리료) -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에 '시행일자(ccyymmdd)/연계하는 요양기관의 요양기호(12345678)/환자등록번호(SPEDIS에 입력된 차트번호)'를 순서대로 기재 * 시행일자: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요양급여의뢰서(별지 제3호 서식)의 "동의서 작성일시" 항목과 동일하게 기재	나. 명세서 작성요령 3) 진료내역 (의뢰환자 관리료) -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에 '초기평가 시행일자(ccyymmdd)/연계하는 요양기관의 요양기호(12345678)/환자등록번호(SPEDIS에 입력된 차트번호)'를 순서대로 기재 〈내용 변경 및 삭제 〉	20
제4장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스템(SPEDIS)		
2. 이용 방법 가. 이용자 사전신청 : 모든 사용자 **문의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구)중앙자살예방센터) 전화 : 02)2203-0053 E-mail:lovelife@spckorea.or.kr	2. 이용 방법 가. 이용자 사전신청 : 모든 사용자 **문의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전화 : 02)3706-0521 E-mail:lifekfsp@kfsp.org	27
나. 일반응급의료기관 1) 화면 구성 다) 대상자 정보 - 수가현황조회 * 초기평가 작성 및 의뢰서 전송 완료된 경우 팝업창의 [수가현황 확인] 리스트에 자동으로 추가	나. 일반응급의료기관 1) 화면 구성 다) 대상자 정보 - 수가현황조회 * 초기평가 작성이 완료된 경우 팝업창의 [수가현황 확인] 리스트에 자동으로 추가	30
2) 각 서식 등록절차 가) 임시초기평가지 등록	2) 각 서식 등록절차 가) 임시초기평가지 등록	34

차례 C/O/N/T/E/N/T/S

개정 전(2021. 3. 29)	개정 후(2021. 8. 1)	page
* 개인정보 동의서는 (1) 모바일 등 웹페이지 상에 환자가 직접 서명하는 전자서명, (2) 출력된 서식에 서명을 받은 후 PDF 업로드, 방법 중 선택 가능	* 개인정보 동의서는 (1) 모바일 등 웹페이지 상에 환자가 직접 서명하는 전자서명, (2) 출력된 서식에 서명을 받은 후 보관, 방법 중 선택 가능	
나)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 파일 업로드 방식	〈삭제〉	-
다)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 웹페이지 전자서명 방식	나)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 웹페이지 전자서명 방식 〈동의서 양식 변경으로 화면 예시 변경〉	35
• 초기평가지 작성 지침 - 환자명 : 환자명 작성 * 〈추가〉 -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작성 * 〈추가〉	• 초기평가지 작성 지침 - 환자명 : 환자명 작성 *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지 못한 경우 [미상]으로 작성 -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작성 *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지 못한 경우 생년과 성별만 작성(월일: “0000”으로 기입) **비고 : 의뢰사유, 시범사업 참여 거부 사유,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하지 못한 사유 등을 기록	37
마)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의뢰 ❷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일시(의뢰환자 관리료 시행일자) 입력 ❸ 직책(예: 응급의학과 전문의) 기입 ❺, ❼ 〈삭제〉 ❽ * 〈삭제〉 ** 〈삭제〉	라)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의뢰 ❷ (구두)동의일시 또는 (서면)개인정보 동의서 작성일시 입력 ❸ 가입당시 입력 정보로 자동입력, 연락처는 수정 가능 ❺ ❻에서 ❺로 이동 ❻ ❽에서 ❻으로 이동	
제6장 별지서식 모음		
[별지 제 2호 서식] 일반응급의료기관 개인정보 동의서	[별지 제 2호 서식] 일반응급의료기관 개인정보 동의서	64~67

개정 전(2021. 3. 29)	개정 후(2021. 8. 1)	page
[별지 제 2-1호 서식] (거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개인정보 동의서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사후관리 및 효과성평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별지 제2-1호 서식] (거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개인정보 동의서 - 〈내용 변경〉 - 〈삭제〉	
[별지 제3호 서식] 일반응급의료기관 의뢰서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요양급여의뢰서	[별지 제3호 서식] 일반응급의료기관 의뢰서 -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의뢰서 〈서식 명칭 및 내용 변경〉	68
별첨 시범사업 관련 질의		
가. 공통사항 Q. 시범 기관의 참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인천광역시 내 20개 응급의료기관 등 전수 참여	가. 공통사항 Q. 시범 기관의 참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인천광역시 내 응급의료기관 등 전수 참여	79
2.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 나. 의뢰환자관리료 Q. “의뢰환자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추가〉	2.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 나. 의뢰환자관리료 Q. “의뢰환자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다만, 응급상황시 구두동의 또는 초기평가 후 연계시도한 경우에도 의뢰환자관리료 산정 가능 ① 응급상황으로 전원이 필요하여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구두동의로 (거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응급실로 연계가 이루어진 경우 ② 초기평가를 실시하고 (거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연계시도 하였으나 거부한 경우	83

차례 C/O/N/T/E/N/T/S

개정 전(2021. 3. 29)	개정 후(2021. 8. 1)	page
3. 청구방법 Q. 〈추가〉	3. 청구방법 Q. 응급상황시 구두동의로 연계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초기평가 후 연계시도하였으나 거부 한 경우 의뢰환자관리료 청구방법은 무엇인가요? - "01항 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 란에 기재하며,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특정기호 "S030"을 기재 * 의료급여 정액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명세서 "X항 81목(진찰료):란에 기재 -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 기재방법 (예시1) 응급상황시 구두동의로 (거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12345678)로 시범사업 대상 환자(환자등록번호 326896)를 의뢰한 경우 ‣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에 '초기평가 시행일자(ccyymmdd)/연계하는 요양기관의 요양기호(12345678)/환자등록번호(SPEDIS에 입력된 차트번호)'를 순서대로 기재 (예시2) 초기평가 후 연계시도를 하였으나 환자(환자등록번호 326896)가 거부한 경우 -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에 '초기평가 시행일자(ccyymmdd)/연계하는 요양기관의 요양기호(12345678)/환자등록번호(SPEDIS에 입력된 차트번호)'를 순서대로 기재하나 연계하는 요양기관의 요양기호는 반드시 "00000000"을 기재	91

제1장

시범사업 개요

제1장 시범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가. 응급실을 통한 자살시도자 개입 필요

- **자살시도자***의 **자살위험**은 **일반인 대비 20~30배 이상**으로, 자살재시도를 예방하기 위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

  * 성인 1명이 자살로 사망할 때 2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살 시도(WHO, 2014), 자살 사망자수 1만3천여명 기준 연간 자살시도자수는 26만여명으로 추정

  -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중 상당수**는 **응급실 퇴원 후** 상담이나 치료 등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자살재시도 위험에 노출**

나.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실시

-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지역사회 안전망으로의 유입**을 통해 **자살재시도 방지**를 목적으로 추진

  -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 **응급처치 후 정신과적 개입**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사례관리 실시**

- 연구결과 사후관리 **서비스 수혜자의 자살사망률이 감소***하는 **일정 수준의 예방효과 확인**

  * 서비스 수혜자의 자살사망률(4.6%)이 비수혜자(12.5%)에 비해 1/3이하로 감소

(출처: 「자살시도자 응급의료체계 모형 개발 연구」 서울보라매병원 송경준(2019))

다.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

- 일부 병원에 대한 사례관리 인력 지원형태의 사업방식으로는 사업 확산에 한계가 있어 자살시도자 발굴 및 관리의 사각지대 존재

  - 사업 수행기관이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17.3%('21.2월 기준)에 불과

  * '19년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164개) 내원 자살시도자(36,553명) 기준, 사업 수행기관(63개) 내원 자살시도자 21,545명(58.9%)만 관리

- **자살시도자 초기개입** 및 **추적관리**에 대한 적정 **건강보험 적용모델**을 마련하여 자살시도자가 어느 기관에 내원하더라도 적절한 치료 및 예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마련 필요

2 사업목적 및 추진 방향

가. 사업목적

-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속적 사후관리**로 **재시도 예방**

나. 추진 방향

- 자살시도자가 **어느 응급실에 가더라도 응급대응** 및 **사례관리 연계**가 가능하도록 **기관유형별 사후관리 체계 구축**

3 추진 근거

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자살 예방 국가 행동계획」** 후속대책('19.9월,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포함

제2장

시범사업 주요 내용

제2장 시범사업 주요 내용

1 사업내용

- **응급실 기반 <u>자살시도자 의뢰·사후관리</u> 및 <u>지역서비스 연계</u>**
  -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 대해 초기평가, 정신과적 진단, 사례관리
  - 병원 사례관리 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

가. 추진모형

● 일반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 대한 초기평가 후, 사례관리가 가능한 사례관리 응급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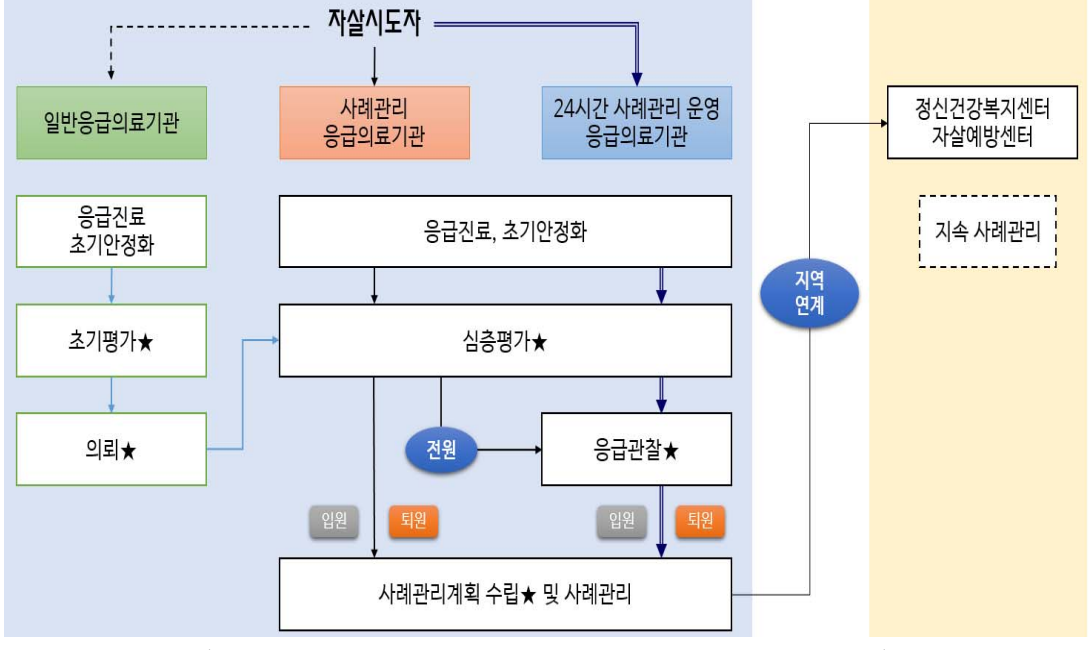

〈응급실 기반 사후관리 시범사업 연계모형(★수가 발생)〉

나. 사업대상

1) 대상 의료기관(이하 '시범기관')

- 응급의료기관,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거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법 제2조제5호) 및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제35조의2)

기관유형별 사후관리 체계

① **일반응급의료기관**(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미수행기관)
- 자살시도자 응급진료, 초기평가,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연계

②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기관)
- 자살시도자 응급진료, 심층 평가,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연계

③ **거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중 **정신과 평가가 24시간 가능한 기관**)
- 자살시도자 **응급관찰***, 심층 평가,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연계

* 응급의료센터 내 관찰 병상에서 최대 72시간 체류 및 관찰

2) 대상자

- 시범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시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

※ 건강보험 가입자(차상위 포함)·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

※ 단, 수사·재판 등 고의적 자해행위가 명확히 밝혀지는 경우 사후 제한 가능

다. 서비스 제공인력

1) (거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 전문의(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사례관리자*

*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2) 일반응급의료기관

- 응급의료센터 내 자체인력(응급의학과 의사, 간호사 등)

라. 사업 기간

- 시범사업 시작일로부터 2년('21.3월~'23.2월)

  ※ '23년에 성과평가 등을 거쳐 사업 연장 여부 등 결정

마. 운영체계

1) 보건복지부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추진 총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 수가 및 급여기준 개발, 요양급여비용 심사·점검, 시범사업 평가 등 사후관리, 시범사업 운영지원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 시범사업 참여 기관 진료비 지급

4) 시범사업 참여 기관

-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진료비 청구 등

5) 운영 및 자문기구

- 보건복지부, 심평원, 공단,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담당자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시범사업 개선 필요사항 도출 및 개선방안 논의

2 사후관리 서비스 내용

가. 시범 기관별 제공 서비스

기관	사후관리서비스	요약
일반응급 의료기관	의뢰 환자 관리	• 자살시도자 초기평가 •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환자연계 전원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 (사례관리 응급의료기관)	의뢰 환자 연계관리	• 일반응급의료기관 의뢰 환자 외래일정 모니터링 • 일반응급의료기관 의뢰 환자 심층평가 참여 독려
	심층평가	• 자살 시도 관련 정신과적 진단평가
	사례관리계획수립	• 초기평가 및 정신과적 진단평가, 면담기반 사례관리 계획에 대한 계획수립
	사례관리	• 주 1회 상담(대면 또는 유선)을 통한 환자 관리(4회)
	지역사회연계	• 사례관리 종료 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
거점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 응급관찰	• 심층평가 결과 자살위험도가 높은 자살시도자는 관찰 병상에서 최대 3일(72시간)까지 체류 및 관찰

1) 초기평가

- 응급실 내원 직후 자살시도자의 응급실 내원정보, 의학적 병력, 자살 시도 과거력, 현재 자살 시도 상황 등 평가

2) 의뢰·연계

- 일반응급의료기관 내원 시 응급처치 및 초기평가 후 대상자 동의를 받아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연계*

  * 의뢰 후 최대 1주일 이내 센터 내원이 이루어지도록 의뢰 환자 연계관리 실시

3) 심층 평가(정신과적 진단)

- 자살 시도와 관련한 환자의 자살위험 등을 통합평가

  - 자살위험도가 높은 환자는 응급관찰 병상에서 체류·관찰(최대 72시간)

4) 사례관리계획

- 자살시도자 초기평가, 정신과적 평가 및 시도자와 가족 면담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반적인 사례관리 계획수립

5) 사례관리

- 의뢰 환자에 대한 외래일정 모니터링, 사후관리 참여 등 독려
- 전화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자살 위험성 모니터링 및 상담 시행

의뢰 환자 연계관리 흐름도(외래 기준)

* 의뢰 환자는 외래연계를 기본으로 하되, 기존 예약된 외래일정으로 인해 의뢰 날로부터 연계 시까지 1주일 이상 소요될 경우 응급실 방문을 통한 심층평가도 가능

6) 지역사회 연계

- 병원 사례관리 종료 후 지역 기반에서의 지속 사례관리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로 연계

3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업무 정의

영역	주요업무	업무 정의
사례 관리팀	의뢰 환자 연계관리	• 일반응급의료기관에서 의뢰된 환자의 외래일정 모니터링 • 일반응급의료기관에서 의뢰된 환자의 심층평가 참여 독려
	초기상담	• 응급의학과에서 연계된 자살시도자와 초기면담 진행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안내 •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동의 요청
	정신과적 평가의뢰	• 초기평가 결과 바탕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의뢰
	사례관리 대상등록	•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대상자 등록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자살시도자는 퇴원 후 사례관리팀과 4주 동안 접촉(전화, 대면상담) • 정신과적 치료를 위한 외래치료 연계
	지역서비스 연계	• 사례관리 후 지속관리를 위한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 연계
	종결·모니터링	• 자체 종결사례 또는 사례관리에 동의하지 않은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서비스 재진입 유도
응급 의학과	신체적 평가	• 신체적 상해에 대한 응급처치 수행
	자살 시도 확인	• 자살시도자의 상해가 자살 시도로 인한 것인지 확인
	초기안정화	• 신체적 안정화 및 초기 정서적 안정화 과정 수행 • 자살시도자 초기평가지 작성
	사례관리팀 의뢰	• 응급실 진료 중 과거 자살 시도 또는 현재 자살사고가 확인된 경우 동의를 얻어 사례관리팀으로 의뢰 • 응급처치 시 발견한 정보를 자살시도자 초기평가지에 작성 후 의뢰 시 첨부
정신건강 의학과	진단평가	• 자살 시도와 관련한 정신과적 진단평가 • 정신건강의학과 의뢰는 응급의학과 의료진 또는 사례관리자에 의해 의뢰될 수 있음
	입원 치료	• 자살 시도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라 판단될 경우 입원치료
	사례 슈퍼 비전	• 사례관리서비스에 대한 슈퍼 비전

제3장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제3장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1 요양급여 기준

가. 요양급여 대상

1) 급여담당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

2) 급여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 자살시도로 요양급여를 받고자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시범사업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1호 서식) 작성 후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상자 정보가 입력된 자

나. 급여 범위 및 비용부담

1) 요양급여 범위

- 요양급여의 적용 및 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별표1)에 따르며, 요양급여의 범위는 동 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한 '비급여 대상'(별표2)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요양급여 비용부담

-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에 분류된 항목에 한하여 건강보험(차상위 포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급여비용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 시범사업 시행 후 최초 1년간 본인부담금 면제(보험자부담률 100%)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해당 의료급여비용 전액을 기금에서 부담

※ 그 외 요양(의료)급여의 부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따름

2 산정지침

가. 일반원칙

-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료’는 개인정보 제공 등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등록된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
-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료’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시스템(이하 SPEDIS)에 관련 내용 등을 작성한 경우 산정
-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료는 ① 의뢰환자관리료, ② 자살시도자 응급관찰관리료, ③ 심층평가료, ④ 사례관리 계획수립료로 구분
-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료’는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산정
-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료’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음
-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료’는 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않음
-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료’ 외 별도로 이루어진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등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및 의료급여수가 기준 및 일반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할 수 있음

나. 의뢰환자관리료

1) '의뢰환자관리료'는 적절한 요양급여를 행하기 위해 (거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진료의뢰를 실시할 때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의뢰 등을 SPEDIS에 등록하는 경우 산정

- 의뢰기관은 요양급여를 의뢰하는 일반응급의료기관을 말하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의뢰한 경우 의뢰환자관리료 소정점수 산정
  - 일반응급의료기관은 자살시도자가 응급실 내원시 응급처치 시행 후 의사 또는 간호사가 초기평가를 실시하고, 사례관리 필요성 및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연계에 대해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
  - 의뢰시 환자에게 적절한 요양급여를 제공할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선정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 선택)**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초기평가지'(별지 제1호 서식) 및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의뢰'(별지 제3호 서식)를 SPEDIS에 입력·전송하여 의뢰 사실 통보

2) '의뢰환자관리료'는 환자가 진료기록 등 개인정보를 의뢰받을 (거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1회 산정

3) '의뢰환자관리료'는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의 의뢰환자관리료와 중복으로 산정하지 않음

다. 심층평가료

1) '심층평가료'는 (거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자살시도 관련 정신과적 진단평가를 실시한 경우 산정

2) '심층평가료'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심층평가지'(별지 제4호 서식)를 SPEDIS에 등록한 경우 1회 산정

3) 심층 평가 목적 외 정신과적 진료를 시행하는 경우 외래진찰료는 산정 가능

4) 건강보험에 한하여 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은 별도산정 가능

라. 사례관리 계획수립료

1) '사례관리 계획수립료'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및 사례관리자가 초기평가, 심층평가 및 자살시도자 면담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례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산정

   * 사례관리 기간(1개월) 동안 최소 주 1회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시행

2) '사례관리 계획수립료'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사례관리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SPEDIS에 등록한 경우 1회 산정

마. 자살시도자 응급관찰 관리료

1) '자살시도자 응급관찰 관리료'는 거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서 산정 가능하며, 정신과적 평가(심층평가)결과 자살위험도가 높은 자살시도자*를 응급의료센터 내 지정된 관찰 병상에서 체류 및 관찰한 경우 최대 3일(72시간)까지 1일 1회 산정

   *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 결과 1·2등급(중증응급환자), 3등급(중증응급의심환자)

2) 거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자살시도자 응급관찰을 위해 응급의료센터 내 **예비병상으로 응급의료센터 내 1병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정된 병상이 아닌 해당 구역에 배치된 간이병상 등에서 응급관찰이 이루어진 경우 산정하지 않음

3) 응급관찰 및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주간에는 상근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야간·공휴일에는 전공의 1인이 병원 내 상주하도록 하며 사례관리팀은 24시간 응급실 내 또는 응급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여야 함

4) '자살시도자 응급관찰 관리료'는 응급관찰 기간 환자 상태를 관찰하고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응급관찰기록지(별지 제6호 서식)'를 SPEDIS에

등록한 경우 산정

5) '자살시도자 응급관찰 관리료'는 각종 야간·공휴 등 가산은 적용하지 않으나, 관찰 기간 실시한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및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행위산정지침에 명시된 각종 가산에 대하여는 적용

3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21년 점수당 단가: 77.3원)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점)	금액(원)
자살 시도자 사후 관리료	ID010	**가. 의뢰환자관리료** 주: 일반응급의료기관에서 자살시도자에 대해 초기평가를 시행하고, (거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연계한 경우 산정	253.97	19,630
	ID020	**나. 자살시도자 응급관찰 관리료** 주: 정신과적 평가 결과 자살위험도가 높은 자살시도자를 거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응급의료센터 내 관찰병상에서 체류 및 관찰한 경우 산정	926.90	71,650
	ID030	**다. 심층평가료**	294.84	22,790
	ID040	**라. 사례관리 계획수립료**	599.08	46,310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이며, 본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 및 「의료급여 수가 기준 및 일반기준」에 의함

가. 청구원칙

1)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자료제출 매체)** 시범 기관은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2) **(청구 시기)**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료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

3) **(심사청구서)** 시범사업 내역과 비시범사업 내역의 심사청구서는 구분 없이 하나의 심사청구서로 작성

4) **(명세서 작성방법)** 동일 수진자에 대해 시범사업 내역과 비시범사업 내역은 분리하여 의과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연이어 각각 작성

※ 의료급여 정액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정액명세서에 작성

5) **(특정내역 기재)** 시범사업 명세서의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특정기호 “S030”(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대상)을 기재하여 청구

나. 명세서 작성요령

1) 일반내역

항목	세부작성요령
요양급여일수	• 해당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요양급여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한다.
입원일수, 총내원일수	• 입원 또는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한다. 다만, 동일 날 시범사업내역과 비시범사업 내역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시범사업 명세서의 총 내원일수를 "0"으로 기재한다.

2) 상병내역

항목	세부작성요령
내원일자, 당월요양개시일	• 내원일자: 외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진료 일자를 기재한다. • 당월요양개시일: 입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경우 요양기관에 해당 상병 진료를 위하여 그 달에 최초 입원한 년·월·일을 기재한다. 단, 입원요양급여비용 분리 청구시 해당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최초 진료 일자를 기재

3) 진료내역

항목	세부작성요령
	• "01항 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한다 ※의료급여 정액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명세서 "X항 81목(진찰료)"란에 기재
의뢰환자 관리료	• 일반응급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 대상 환자(환자등록번호 326896)를 (거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12345678)로 의뢰하는 경우 -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에 '초기평가 시행일자(ccyymmdd)/연계하는 요양기관의 요양기호(12345678)/환자등록번호(SPEDIS에 입력된 차트번호)'를 순서

항목	세부작성요령

대로 기재

항	목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X)	03 (81)	0001	1	ID010	19,630	1	1	19,63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T002	S030					
2	0001	JX999	20210330/12345678/326896					

자살 시도자 응급관찰 관리료

- 거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관찰병상에서 2021년 4월 20일 2am ~ 2021년 4월 21일 5am까지 시범사업 대상 환자(환자등록번호 326896)에게 응급관찰을 시행한 경우
  - 자살시도자 응급관찰 관리료 수가를 각각 산정
  - 특정내역 MT046(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에 해당되는 중증도 등급을 기재하고,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에 '시행일자(ccyymmdd)/환자등록번호(SPEDIS에 입력된 차트번호)'를 순서대로 기재
    * 시행일자: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응급관찰 기록지(별지 제6호 서식)의 "관찰일시" 항목과 동일하게 기재

항	목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X)	03 (81)	0001	1	ID020	71,650	1	1	71,650
01 (X)	03 (81)	0002	1	ID020	71,650	1	1	71,65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T002	S030				
1			MT046	1				
2	0001		JX999	20210420/326896				
2	0002		JX999	20210421/326896				

<table>
<tr><th>항목</th><th>세부작성요령</th></tr>
<tr><td>심층
평가료</td><td>
• (거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서 시범사업 대상 환자(환자등록번호 326896)에게 심층평가를 시행한 경우
–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에 ‘시행일자(ccyymmdd)/환자등록번호(SPEDIS에 입력된 차트번호)’를 순서대로 기재
* 시행일자: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심층평가지(별지 제4호 서식)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개입시간”항목과 동일하게 기재
<table>
<tr><th>항</th><th>목</th><th>줄번호</th><th>코드구분</th><th>코드</th><th>단가</th><th>일투</th><th>총투</th><th>금액</th></tr>
<tr><td>01
(X)</td><td>03
(81)</td><td>0001</td><td>1</td><td>ID030</td><td>22,790</td><td>1</td><td>1</td><td>22,790</td></tr>
<tr><td colspan="9">특정내역기재란</td></tr>
<tr><td colspan="2">발생단위구분</td><td>줄번호</td><td>특정내역구분</td><td colspan="5">특정내역</td></tr>
<tr><td colspan="2">1</td><td></td><td>MT002</td><td colspan="5">S030</td></tr>
<tr><td colspan="2">2</td><td>0001</td><td>JX999</td><td colspan="5">20210425/326896</td></tr>
</table>
</td></tr>
<tr><td>사례관리
계획
수립료</td><td>
• (거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서 시범사업 대상 환자(환자등록번호 326896)에게 사례관리 계획수립을 시행한 경우
–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에 ‘시행일자(ccyymmdd)/환자등록번호(SPEDIS에 입력된 차트번호)’를 순서대로 기재
* 시행일자: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사례관리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사례회의 일자” 항목과 동일하게 기재
<table>
<tr><th>항</th><th>목</th><th>줄번호</th><th>코드구분</th><th>코드</th><th>단가</th><th>일투</th><th>총투</th><th>금액</th></tr>
<tr><td>01
(X)</td><td>03
(81)</td><td>0001</td><td>1</td><td>ID040</td><td>46,310</td><td>1</td><td>1</td><td>46,310</td></tr>
<tr><td colspan="9">특정내역기재란</td></tr>
<tr><td colspan="2">발생단위구분</td><td>줄번호</td><td>특정내역구분</td><td colspan="5">특정내역</td></tr>
<tr><td colspan="2">1</td><td></td><td>MT002</td><td colspan="5">S030</td></tr>
<tr><td colspan="2">2</td><td>0001</td><td>JX999</td><td colspan="5">20210426/326896</td></tr>
</table>
</td></tr>
</table>

다. 특정내역 구분 코드 작성요령

1) 명일련 단위

구분코드	특정내역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MT002	특정기호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 대상의 경우 "S030"을 기재 • 기재형식: X(4) • (예시)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MT002 S030
MT046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 '자살시도자 응급관찰 관리료' 청구시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에 해당되는 중증도 등급 기재 • 기재형식: 9(1)

2) 줄번호 단위

구분코드	특정내역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JX999	기타내역	• '의뢰환자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 시행일자/의뢰하는 요양기관의 요양기호(8자리)/환자등록번호(SPEDIS에 등록된 차트번호)기재 - 기재형식: ccyymmdd/9(8)/X(30) • '자살시도자 응급관찰 관리료', '심층평가료', '사례관리 계획수립료'를 산정하는 경우 - 시행일자/환자등록번호(SPEDIS에 등록된 차트번호)기재 - 기재형식: ccyymmdd/X(30)

라. 보완 및 추가청구

1) 보완청구

- 시범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심사불능 처리된 건에 대하여는 해당사유를 보완하여 청구

2) 추가청구

- 시범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명세서 중 진료내역의 일부가 당초 청구 시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진료내역만 추가 청구

3) 기타

- 보완·추가청구 시 기재하는 구분코드 및 청구방법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름

제4장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스템(SPEDIS)

제4장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스템(SPEDIS)

1 시스템 개요

- 시스템명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스템(SPEDIS)
  * Suicide Prevention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
- 홈페이지 주소 : www.spedis.or.kr
- 이용대상: 시범사업 참여 전 기관(필수)
- 시스템 운영기관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주요기능 : 수가 신청 서식 입력, 시스템을 통한 의뢰, 수가 신청 정보 확인 등

가. 시스템 이용

1) 목적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및 기관 간 연계 등 서비스 전 과정에 대한 관리·운영

2) 이용대상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응급의료기관

3) 주요기능

- 초기평가, 의뢰, 심층평가, 응급관찰, 사례관리 계획수립 등 수가 신청 관련 서식 입력 및 서비스 제공 내역 확인

2 이용 방법

가. 이용자 사전신청 : 모든 사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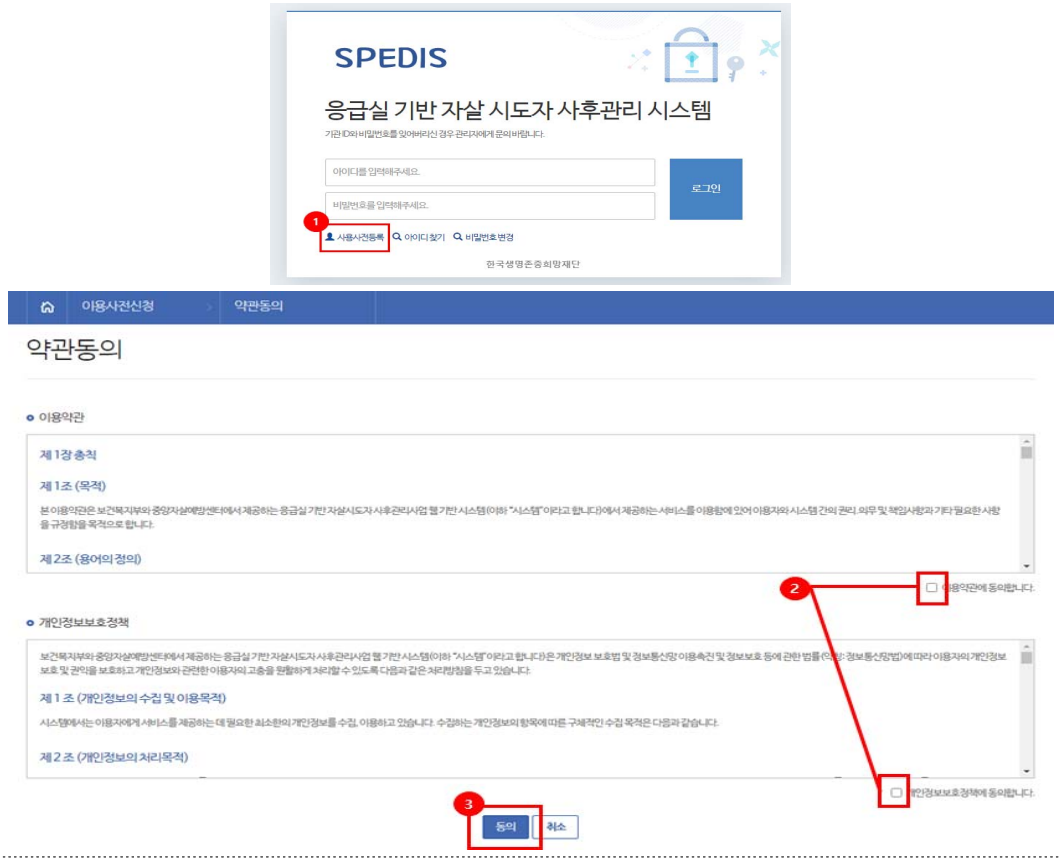

❶ 사용사전등록 클릭

❷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체크박스 클릭 후 동의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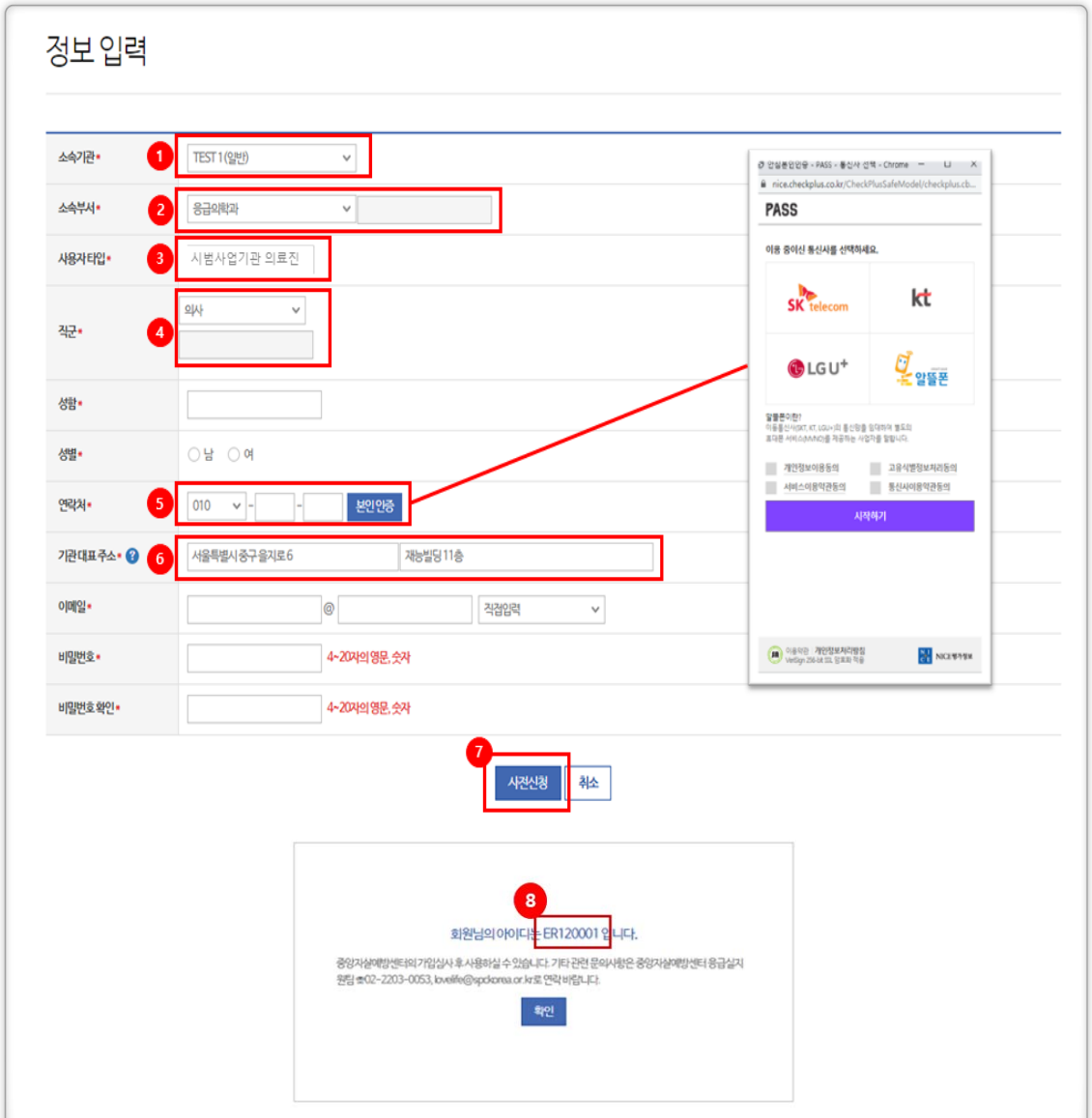

❶ 소속기관 선택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기관등록 신청 요청 필요

❷ 소속부서 선택 :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사회사업과, 기타 중 선택

* 리스트에 없는 경우, 기타 선택 후 텍스트 입력

❸ 사용자 유형

SPEDIS 분류	사용자
기관관리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센터장, 부센터장
사례관리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사례관리자
수행병원 의료진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의료진
시범사업기관 의료진	시범사업기관(일반응급의료기관) 의료진

❹ 직군 선택 : 리스트에 없는 경우 기타 선택 후 텍스트 입력

❺ 연락처 : 본인인증 필수

* 성명, 연락처를 기입해야 본인인증 가능

❻ 기관 대표 주소 : 기관등록 정보를 통해 자동입력

❼ 모든 항목 입력 후 사전신청 클릭

❽ 사전신청 완료 후 자동으로 아이디 발급

* 사전신청 완료 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승인 완료 후 로그인 및 사용 가능

** 문의: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전화:02)3706-0521. E-mail:lifekfsp@kfsp.org

나. 일반응급의료기관

1) 화면 구성

가) 메인화면

❶ 로그인한 사용자의 성명으로, 클릭하면 사용자 정보 열람가능

* 사용자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요청

** 아이디 찾기 및 비밀번호 찾기(변경)는 로그인 화면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후 가능

❷ 클릭하면 로그아웃 후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

❸ 대상자 정보 : 초기평가지(시범), 수가신청 조회, 개인정보 동의서 리스트로 이동

❹ 의뢰한 환자의 처리상태 확인 가능 : 표기된 숫자는 [의뢰 대기 중]인 환자 수가 표시되며, 숫자를 클릭하면 초기평가지(시범) 페이지로 이동

❺ [초기평가 임시등록]을 클릭하면 **[임시 초기평가지 등록]** 페이지로 이동

❻ [시범사업수행기관 안내]를 클릭하면 [사업안내-사업수행기관 안내] 페이지로 이동

나) 대상자 정보 - 초기평가지(시범)

● 초기평가지(시범) 대상자 정보조회 및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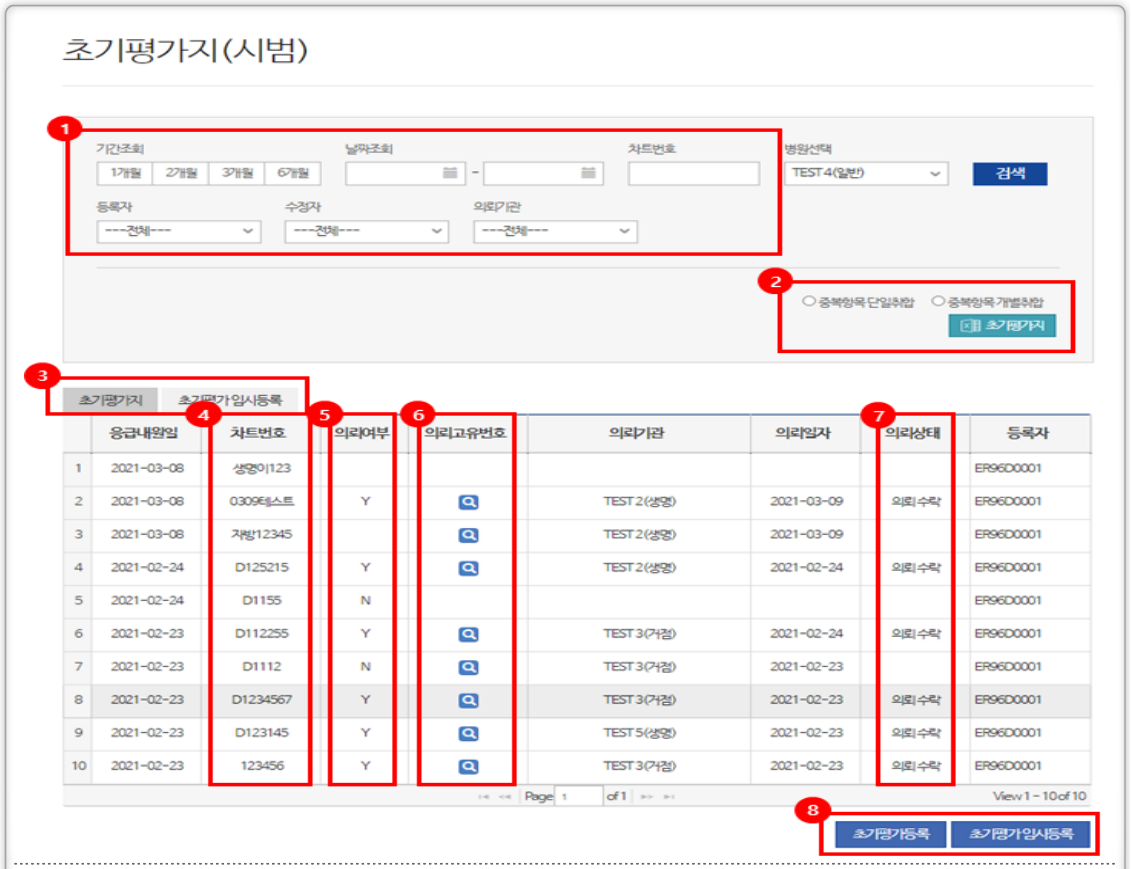

❶ 기간, 날짜, 차트번호, 등록자, 수정자를 지정하여 검색 가능하며, 미지정 시 전체 리스트 노출

❷ 초기평가지 리스트 엑셀로 다운로드 가능

* 중복항목 단일취합은 다중응답 항목이 한 셀에 표시되며, 중복항목 개별취합은 다중응답 항목이 여러 셀에 표시됨

❸ [초기평가지], [초기평가 임시등록] 리스트로 이동

❹ 차트번호 클릭하면 해당 초기평가지 조회 화면으로 이동

❺ 의뢰여부 [Y], [N]로 확인 가능

❻ 의뢰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돋보기]가 생성되며, 클릭하면 의뢰서 화면으로 이동

❼ 의뢰 상태 확인 : [의뢰 대기 중]은 의뢰기관에서 수락 전을 의미하며, [의뢰 수락]은 의뢰기관에서 대상자 정보 확인 후 의뢰 수락함을 의미

❽ [초기평가 등록], [초기평가 임시등록] 화면으로 이동

다) 대상자 정보 - 수가현황조회

- 수가 신청이 가능한 리스트 확인, 수가 신청은 별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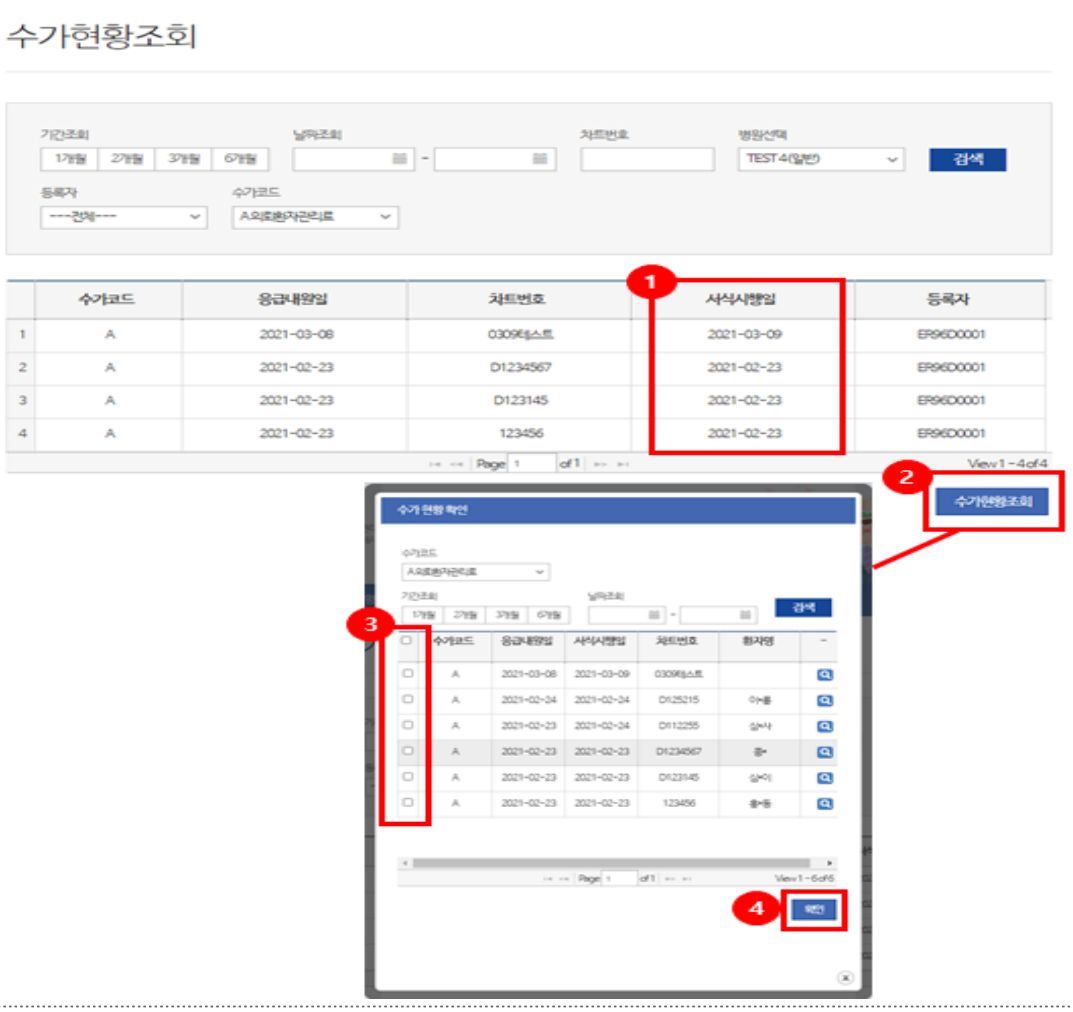

❶ 서식시행일 :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일시

❷ [수가현황조회]를 클릭하면 팝업창에서 수가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리스트 확인 가능

❸ 개별항목 또는 전체항목 클릭을 통해 수가 신청 예정인 대상 클릭

❹ [확인]을 클릭하면 수가현황조회 리스트에 추가됨

* 초기평가 작성이 완료된 경우 팝업창의 [수가현황 확인] 리스트에 자동으로 추가

라) 대상자 정보 - 개인정보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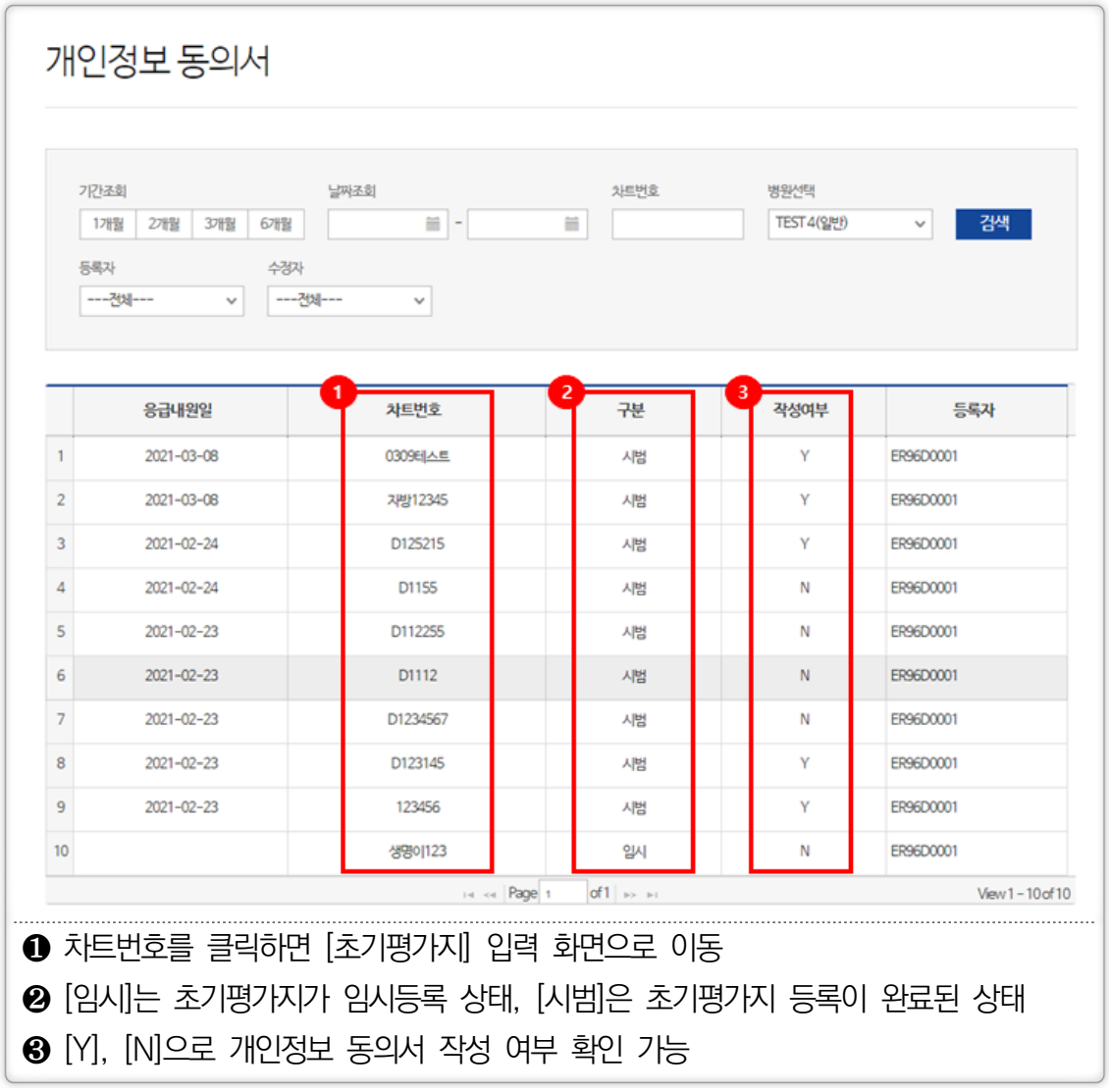

❶ 차트번호를 클릭하면 [초기평가지] 입력 화면으로 이동

❷ [임시]는 초기평가지가 임시등록 상태, [시범]은 초기평가지 등록이 완료된 상태

❸ [Y], [N]으로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여부 확인 가능

2) 각 서식 등록절차

가) 임시초기평가지 등록

• **관련서식 : [별지 제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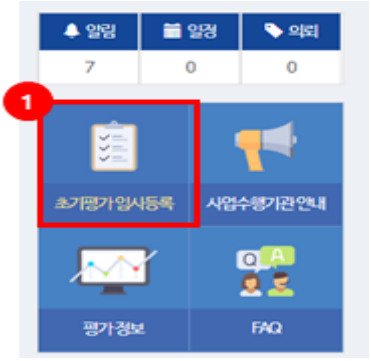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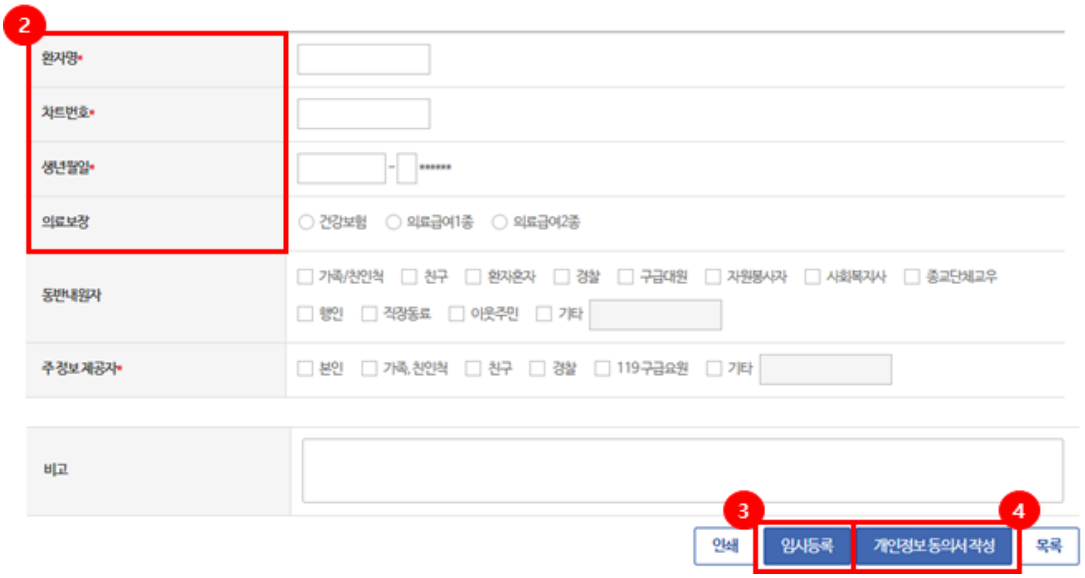

❶ 메인화면의 [초기평가 임시등록] 클릭

❷ [임시등록]을 위한 필수입력 항목

❸ 환자 정보 입력 후 저장을 위해 [임시등록] 클릭

❹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을 클릭하면 동의서 작성을 위한 웹페이지로 이동

* 개인정보 동의서는 **(1) 모바일 등 웹페이지 상에 환자가 직접 서명하는 전자서명, (2) 출력된 서식에 서명을 받은 후 보관**, 방법 중 선택 가능

** 데스크탑 외 태블릿, 휴대폰 등 모바일에서 SPEDIS의 모든 기능 사용 가능

나)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 웹페이지 전자서명 방식

• **관련서식 : [별지 제2호]**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업로드

중자방병원은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참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수집되는 모든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사업 참여 통계분석 및 정책연구에 활용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항목	수집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의료보장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운영기간 (사업 시행 및 연구기간 포함)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1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마.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의 개인정보 동의 여부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Clear	전화번호	
	생년월일		******	주소	

※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요망

- 본인은 환자(성명:)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2021 년 07 월 26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Clear

중자방병원 병원 귀중

취소 등록 목록

❶ 만 14세 이상의 경우 ❷의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 동의함] 체크

❷ 만 14세 미만의 경우 ❷의 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에 [☑ 동의함] 체크

❸ [서명] 부분에 환자 본인의 서명 필수 : 마우스 또는 화면 터치를 통해 전자서명 가능.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하단의 [Clear] 클릭

다) 초기평가지 등록

• **관련서식 : [별지 제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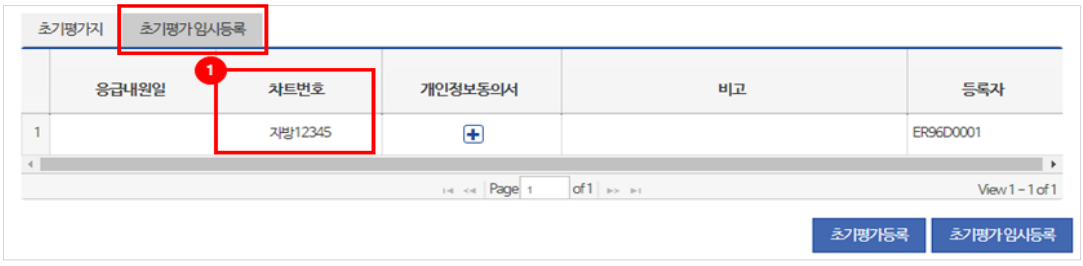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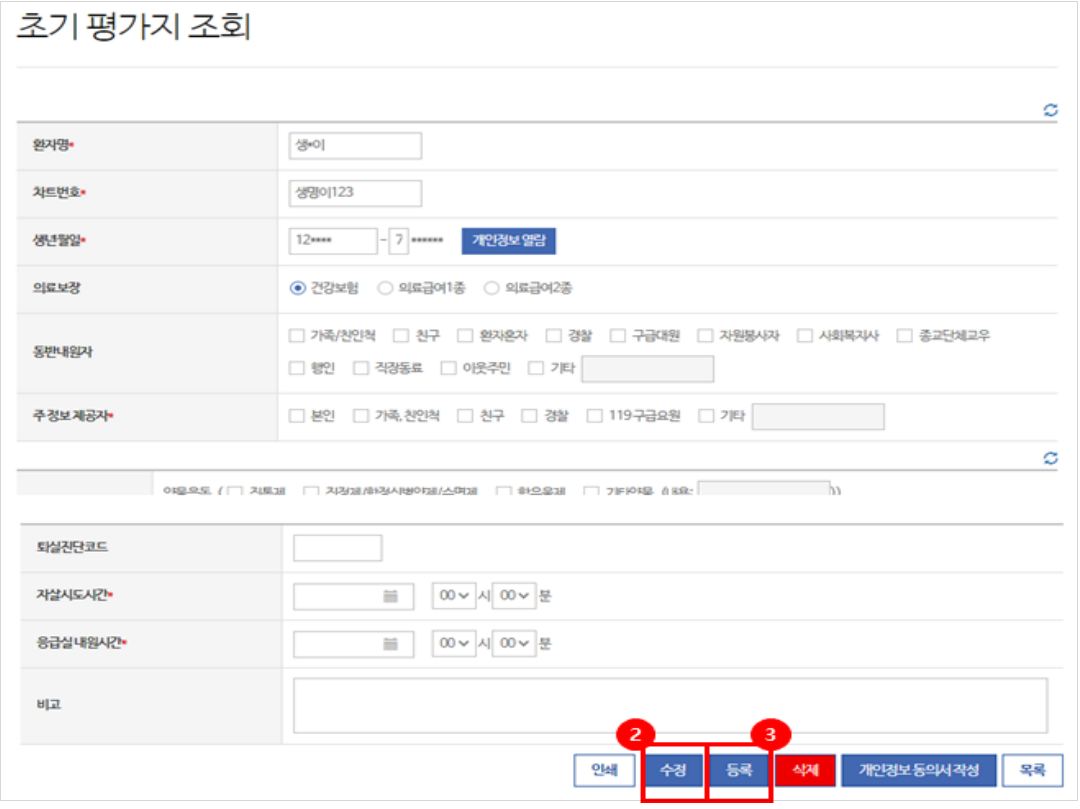

❶ [초기평가 임시등록] 탭에서 초기평가지를 등록하려는 환자의 차트번호 클릭

* [임시등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초기평가지 탭에서 등록 가능

❷ 추가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클릭

❸ 초기평가지 작성을 완료한 경우 [등록] 클릭 : 모든 항목 작성 필요

* 등록 후 목록에서 해당 차트번호를 다시 클릭하면 의뢰서 작성 가능

초기평가지 작성 지침

- 환자명 : 환자명 작성
  *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지 못한 경우 **[미상]**으로 작성
- 차트번호 : 병원 차트번호(병록번호)와 동일하게 작성
-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까지 작성
  *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지 못한 경우 **생년과 성별만** 작성: 월일은 0000으로 작성
- 의료보장 : 건강보험,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중 택1
- 주 정보 제공자 : 응급실 내원 당시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 중복체크 가능
- 자살시도 방법 : 응급실 내원 시 환자의 자살시도 방법(수단), 중복체크 가능
  * 자살시도방법이 여러 가지인 경우 주 손상과 관련된 자살시도 방법 체크
- 동반 손상 진단명 : ICD-10 진단코드 중 S, T 코드에 해당하는 경우만 체크
- 활력징후 : 측정불가 또는 비대상 [-1]
- 현재 자살사고

없음	질문 TIP : '지금 자살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있음	
면담불가	의식 없음 등으로 면담이 어려운 경우

- 응급실 조치결과 : 응급실 진료 후 결과 기록
  * 응급실에서 자의퇴원 후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의뢰된 경우 [귀가-자의퇴원]
  ** 응급실에서 즉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전원하는 경우 [전원-응급실사업 수행병원 전원]
- 퇴실진단코드 : 응급실 외래 또는 입원한 환자의 퇴원 시의 진단코드
- 자살시도시간 : 자살시도 일시를 가능한 정확히 확인하여 기록
- 비고 : 의뢰 사유, 시범사업 참여 거부 사유,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하지 못한 사유 등을 기록

라)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의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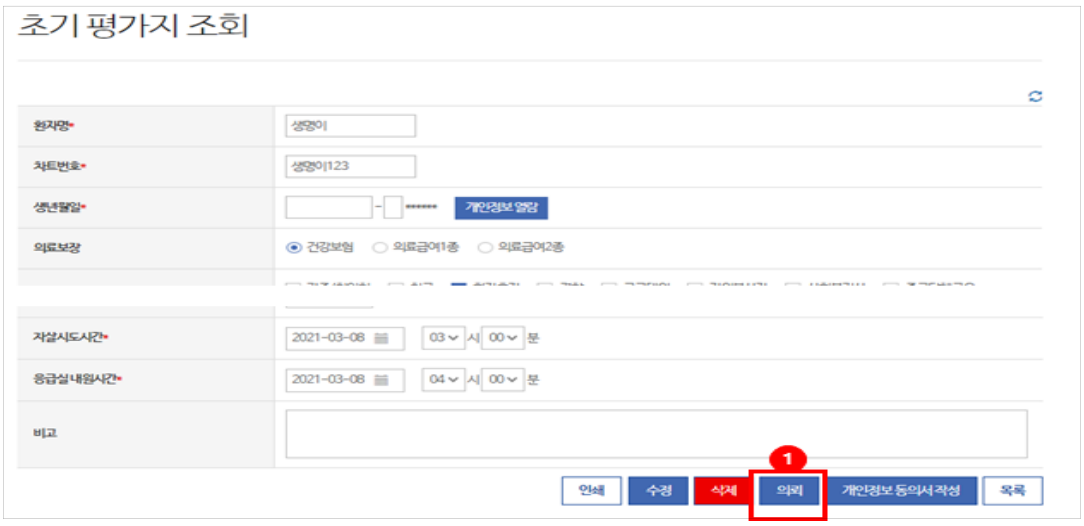

❶ 초기평가지 리스트 중 차트번호 선택, 초기평가지 조회 화면에서 하단의 [의뢰]를 선택, 의뢰서 등록화면으로 이동

❷ **(구두)**동의일시 또는 **(서면)**개인정보 동의서 작성일시 입력

❸ 가입당시 입력 정보로 자동입력, 연락처 수정 가능

❹ 환자 본인 연락처 또는 보호자 연락처 중 1개 이상 필수입력

❺ 연계기관명(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을 리스트에서 선택

❻ [의뢰]를 클릭하면 연계기관으로 의뢰서가 자동 전송

바) 개인정보 열람

- 환자명과 생년월일은 등록 후 일부가 *로 표시되며,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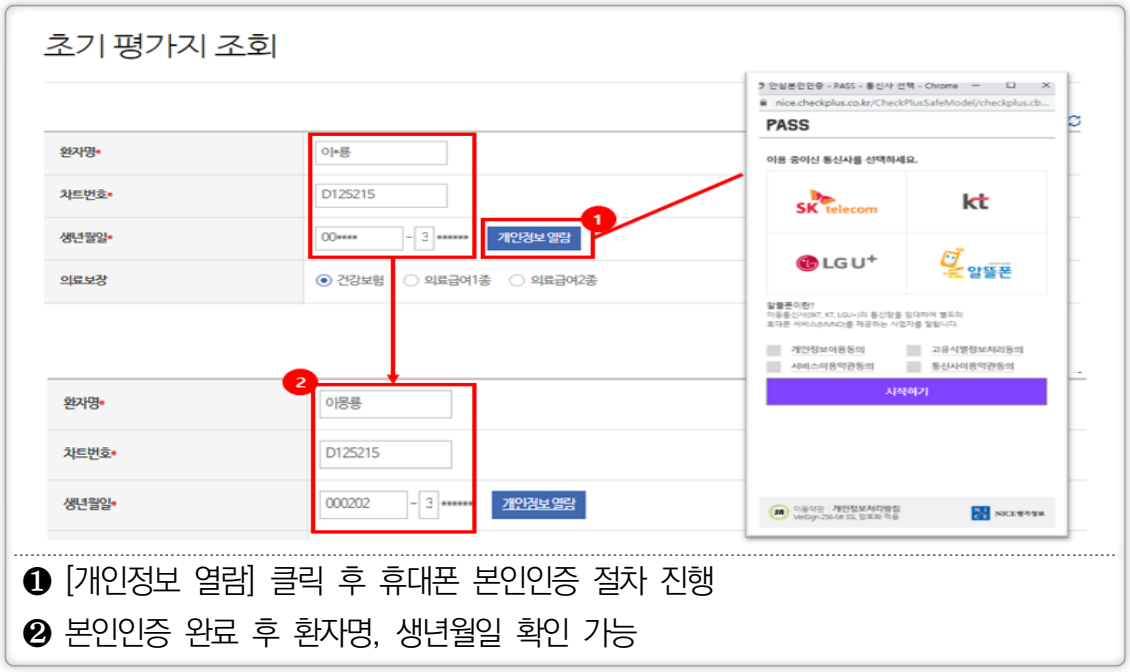

❶ [개인정보 열람] 클릭 후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 진행

❷ 본인인증 완료 후 환자명, 생년월일 확인 가능

다. (거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1) 화면 구성

가) 메인화면

❶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대상자 정보 메뉴

❷ 거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대상자 정보 메뉴

❸ 시범사업기관(일반응급의료기관)에서 의뢰받은 환자 중 [의뢰 대기 중]인 수 표시, 클릭하면 [의뢰] 메뉴로 이동

❹ 거점센터의 경우,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서 응급관찰을 위해 의뢰받은 환자 중 [의뢰 대기 중]인 수 표시, 클릭하면 [응급관찰의뢰] 메뉴로 이동

❺ [초기평가등록]을 클릭하면 초기평가지 등록 페이지로 이동

나) 대상자 정보 - 초기평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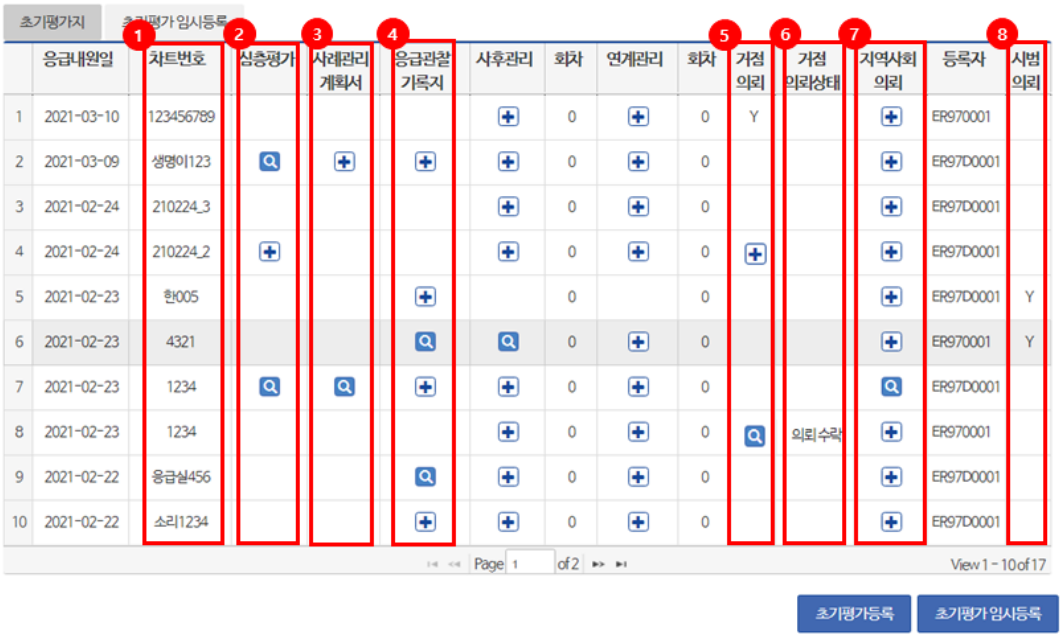

❶ [차트번호]를 클릭하면 [초기평가지 등록/조회] 화면으로 이동

❷ [초기평가지]와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이 완료된 경우 [심층평가] 작성 가능

* (거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응급관찰 의뢰 전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서 심층평가가 진행된 경우 작성 불가

❸ [심층평가] 완료된 경우 [사례관리 계획서] 작성 가능

* [응급관찰 의뢰]를 진행한 환자는 거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서 [사례관리 계획서] 작성 가능하며,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의 경우, 거점센터로 의뢰한 환자는 [사례관리 계획서] 불가

❹ (거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심층평가]가 완료된 경우 [응급관찰기록지] 작성 가능

* 의뢰 전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서 [심층평가]가 작성된 경우에도 작성 가능

❺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응급관찰 의뢰를 위한 [의뢰서] 작성 가능
(거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응급관찰 의뢰받은 환자에 [Y] 표시

❻ (거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응급관찰 의뢰 건 수락여부 확인

❼ 지역사회 의뢰를 위한 [의뢰서] 작성 가능

* '지역사회 기관 의뢰'는 의뢰서 작성페이지이며 시스템으로 연계되지 않으므로 별도 발송 필요

❽ 일반응급의료기관에서 의뢰받은 환자에 [Y] 표시

(공통) [플러스] 표시는 해당 서식 작성 화면으로 이동, [돋보기] 표시는 작성된 내용 확인 가능

다) 대상자 정보 - 의뢰(응급관찰의뢰 메뉴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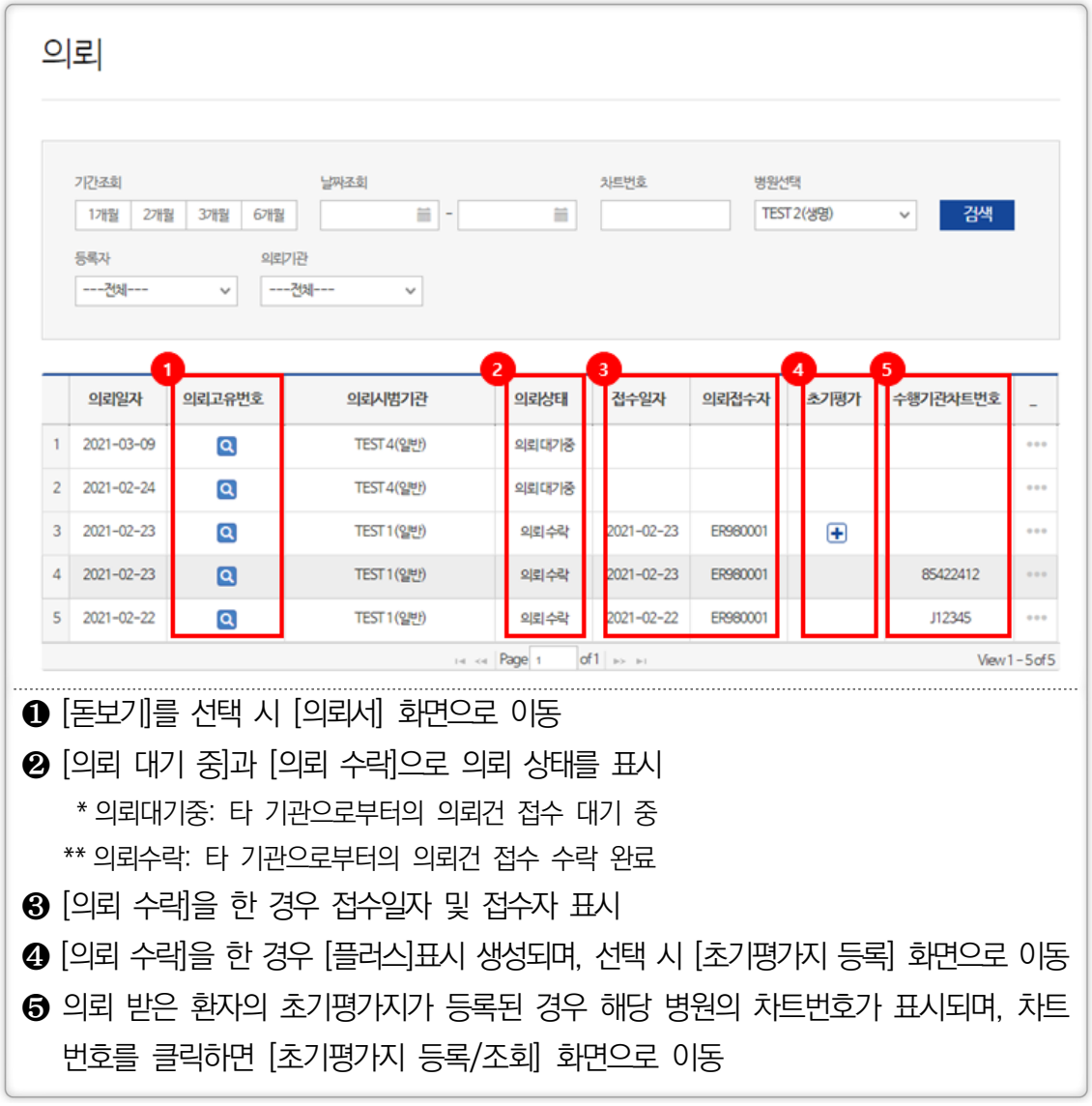

❶ [돋보기]를 선택 시 [의뢰서] 화면으로 이동

❷ [의뢰 대기 중]과 [의뢰 수락]으로 의뢰 상태를 표시

* 의뢰대기중: 타 기관으로부터의 의뢰건 접수 대기 중

** 의뢰수락: 타 기관으로부터의 의뢰건 접수 수락 완료

❸ [의뢰 수락]을 한 경우 접수일자 및 접수자 표시

❹ [의뢰 수락]을 한 경우 [플러스]표시 생성되며, 선택 시 [초기평가지 등록] 화면으로 이동

❺ 의뢰 받은 환자의 초기평가지가 등록된 경우 해당 병원의 차트번호가 표시되며, 차트번호를 클릭하면 [초기평가지 등록/조회] 화면으로 이동

라) 대상자 정보 - 수가 현황 조회

- 수가 신청이 가능한 리스트 확인, 수가 신청은 별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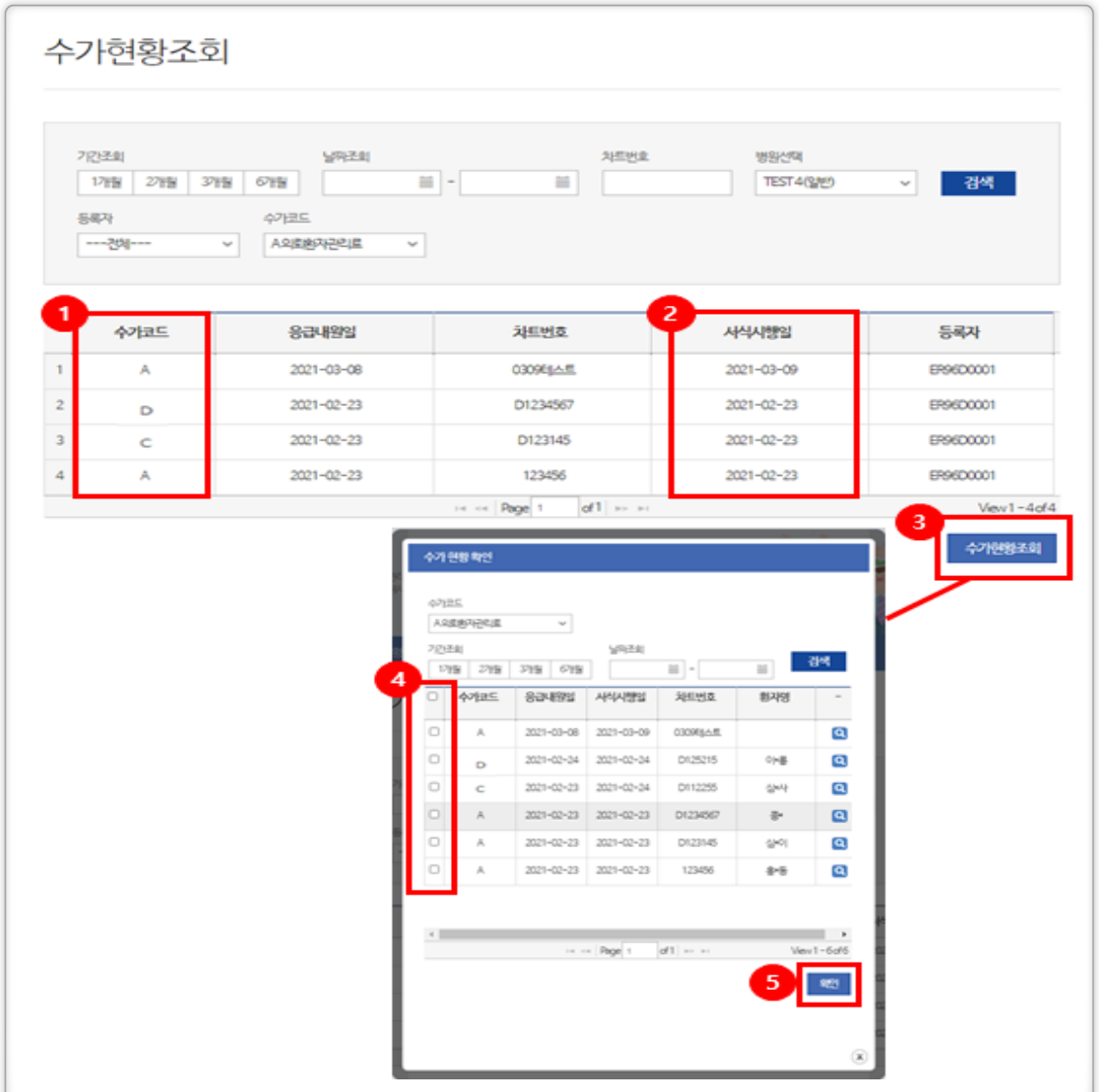

❶ 수가코드 표시

❷ 각 서식의 서식시행일

❸ [수가현황조회]를 클릭하면 팝업창에서 수가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리스트 확인 가능

❹ 개별항목 클릭 또는 전체항목 클릭을 통해 수가 신청 예정인 대상 클릭

❺ [확인]을 클릭하면 수가현황조회 리스트에 추가됨

* 각 서식이 수가적용 조건에 맞게 작성된 경우 팝업창의 [수가현황 확인] 리스트에 자동으로 추가

마) 대상자 정보 - 개인정보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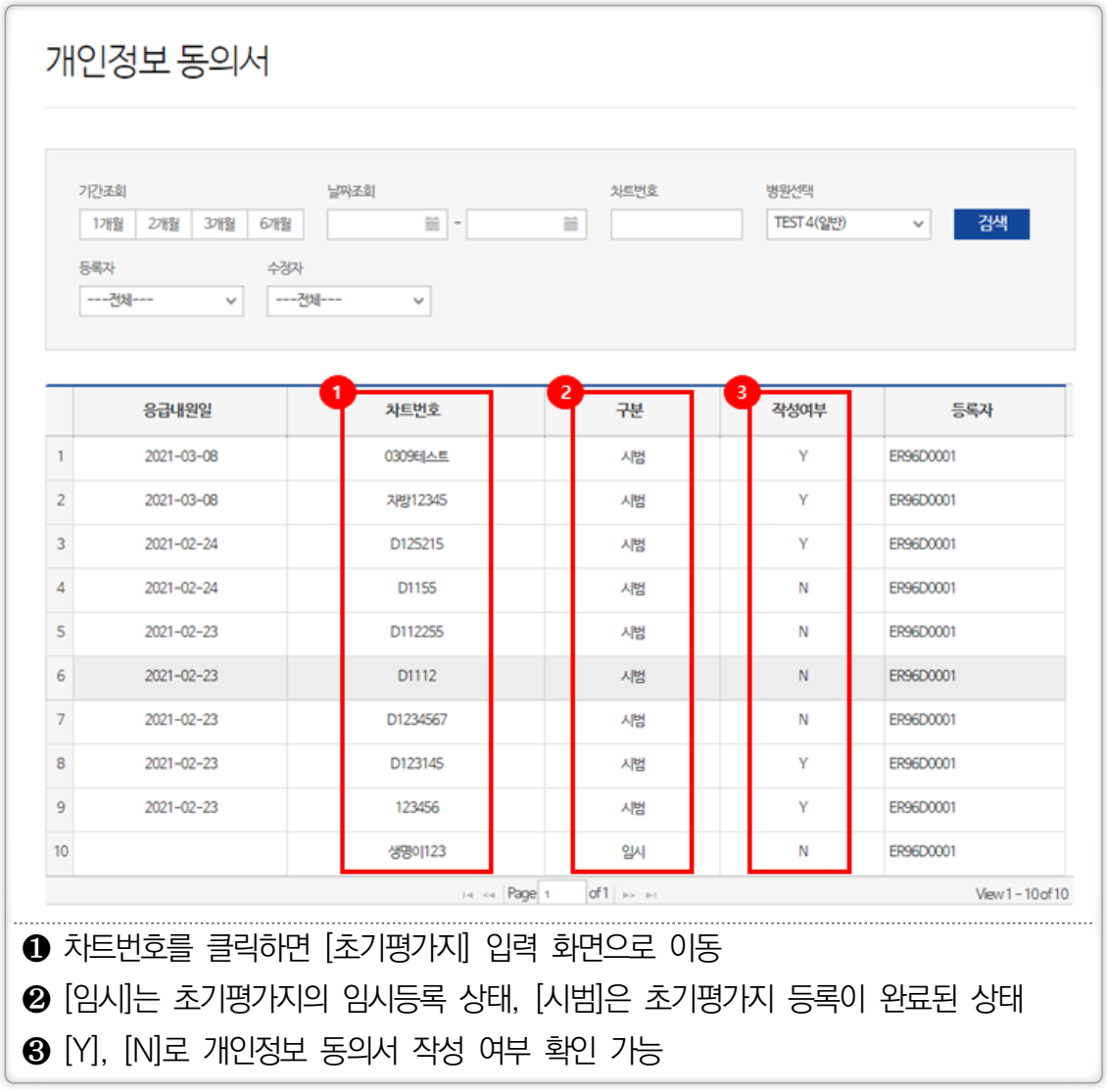

❶ 차트번호를 클릭하면 [초기평가지] 입력 화면으로 이동

❷ [임시]는 초기평가지의 임시등록 상태, [시범]은 초기평가지 등록이 완료된 상태

❸ [Y], [N]로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여부 확인 가능

바) 대상자 정보 - 응급관찰기록지(거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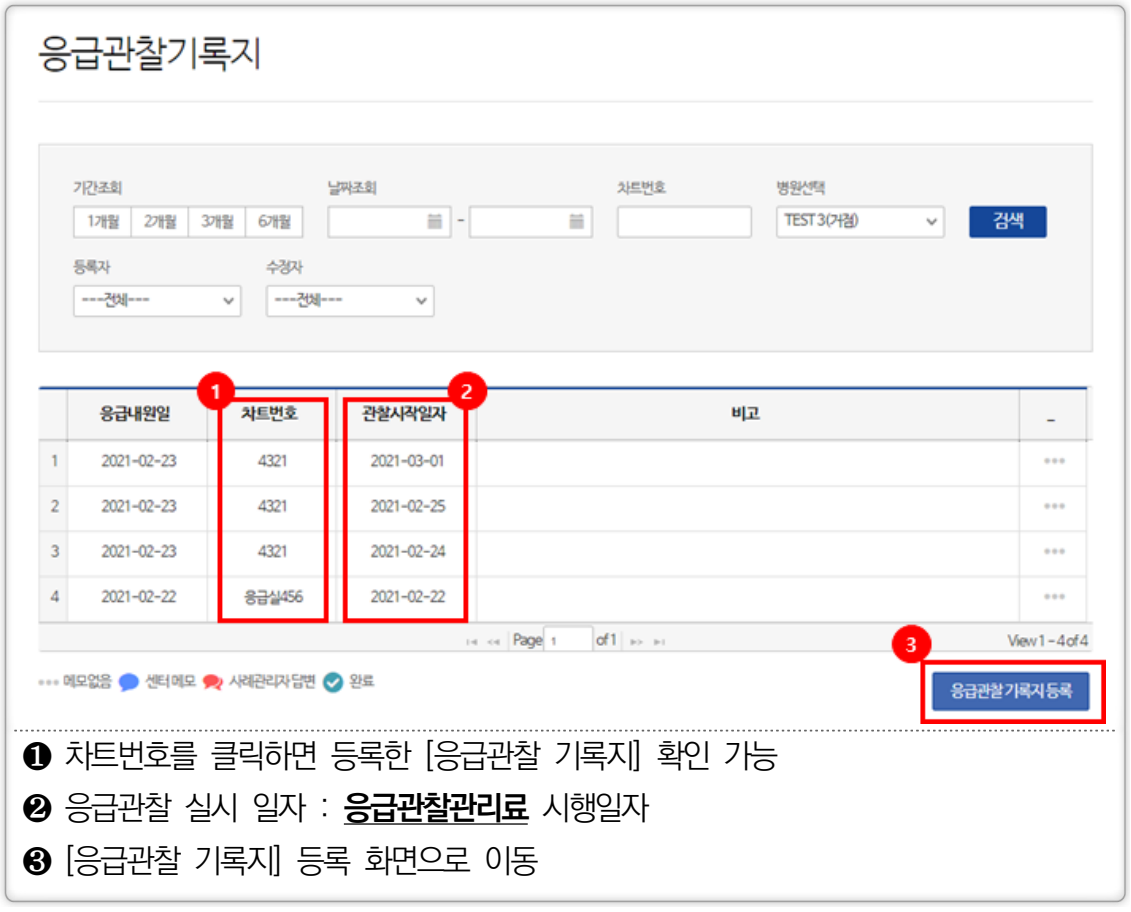

❶ 차트번호를 클릭하면 등록한 [응급관찰 기록지] 확인 가능

❷ 응급관찰 실시 일자 : **응급관찰관리료** 시행일자

❸ [응급관찰 기록지] 등록 화면으로 이동

2) 각 서식 등록

가) 임시초기평가지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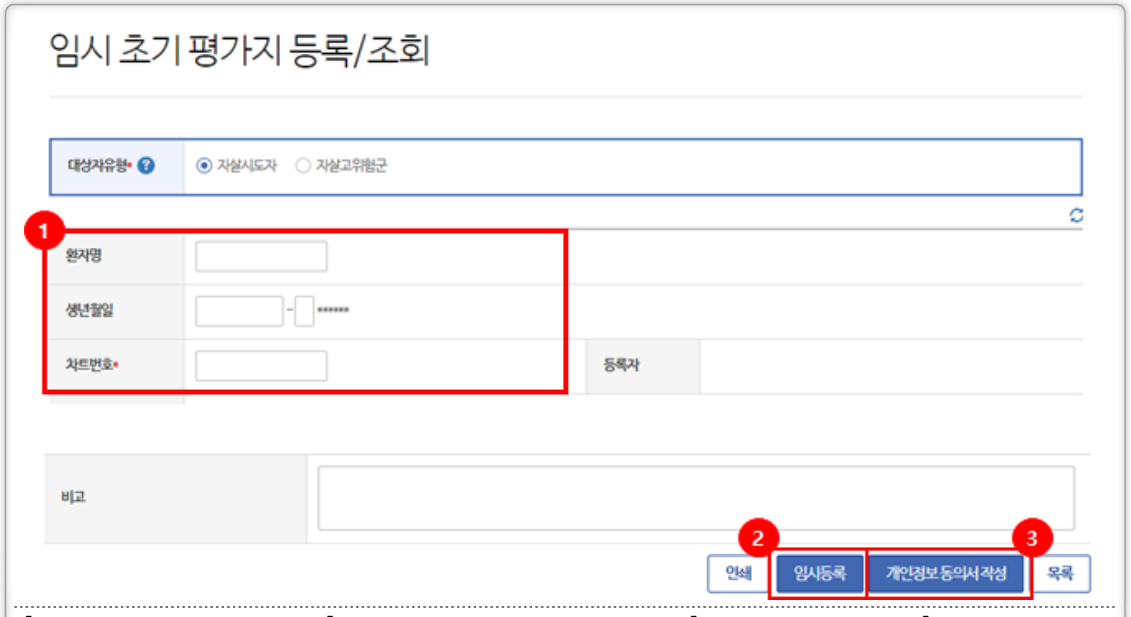

[대상자 정보-초기평가지] 메뉴 클릭 후 화면 하단의 [초기평가 임시등록] 클릭

❶ [임시등록]을 위한 필수입력 항목 : 환자명, 생년월일, 성별, 차트번호, 의료보장

* 의료보장형태가 (건강보험,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으로 입력된 경우만 [수가현황조회-팝업창의 수가현황 확인] 리스트에 추가됨

❷ 환자 정보 입력 후 저장을 위해 [임시등록] 클릭

❸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을 클릭하면 동의서 작성을 위한 웹페이지로 이동

* 개인정보 동의서는 **(1) 모바일 등 웹페이지 상에 환자가 직접 서명하는 전자서명, (2) 출력된 서식에 서명을 받은 후 PDF로 업로드**, 방법 중 선택 가능

** 데스크탑 외 태블릿, 휴대폰 등 모바일에서 SPEDIS 사용 가능

나)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 파일 업로드 방식

-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이 안 된 경우 초기평가자에 환자명, 생년월일 작성 불가

• **관련서식 : [별지 제2-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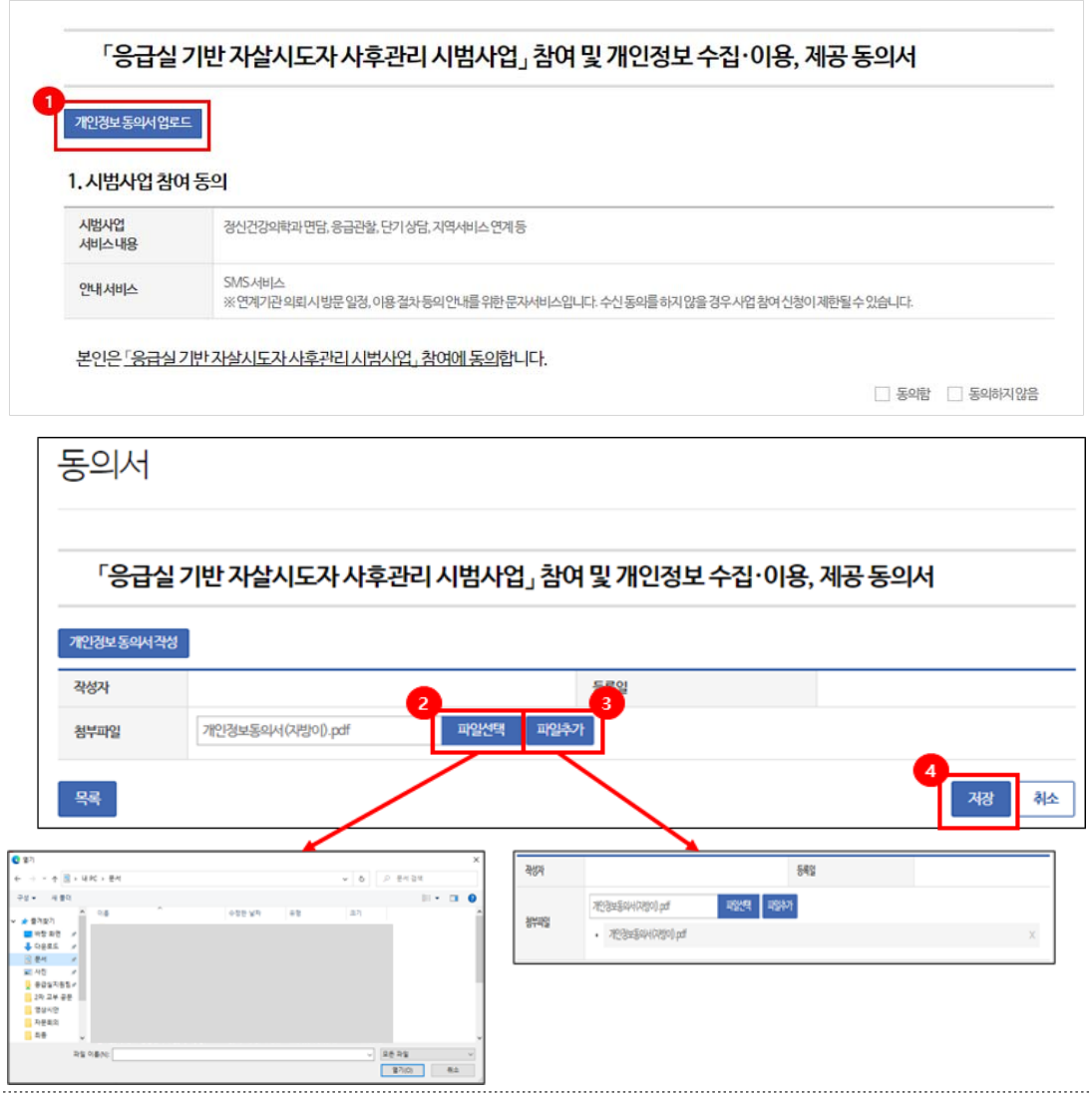

❶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페이지 상단의 [개인정보 동의서 업로드] 클릭

❷ [파일선택] 클릭 후 동의서 PDF 파일선택

❸ [파일추가]를 누르면 해당파일이 첨부되며, [×]표시 클릭하면 삭제 가능

❹ [저장] 후 완료

다)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 웹페이지 전자서명 작성

• **관련서식 : [별지 제2-1호]**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업로드

중자방병원은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참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수집되는 모든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사업 참여 통계분석 및 정책연구에 활용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항목	수집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의료보장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운영기간 (사업 시행 및 연구기간 포함)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1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마.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의 개인정보 동의 여부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Clear	전화번호	- -
	생년월일	- ******	주소	

※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요망

- 본인은 환자(성명:)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2021 년 07 월 26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Clear

중자방병원 병원 귀중

취소 등록 목록

❶ 만 14세 이상의 경우 ❷의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 동의함] 체크

❷ 만 14세 미만의 경우 ❷의 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에 [☑ 동의함] 체크

❸ [서명] 부분에 환자 본인의 서명 필수 : 마우스 또는 화면 터치를 통해 전자서명 가능.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하단의 [Clear] 클릭

라) 초기평가지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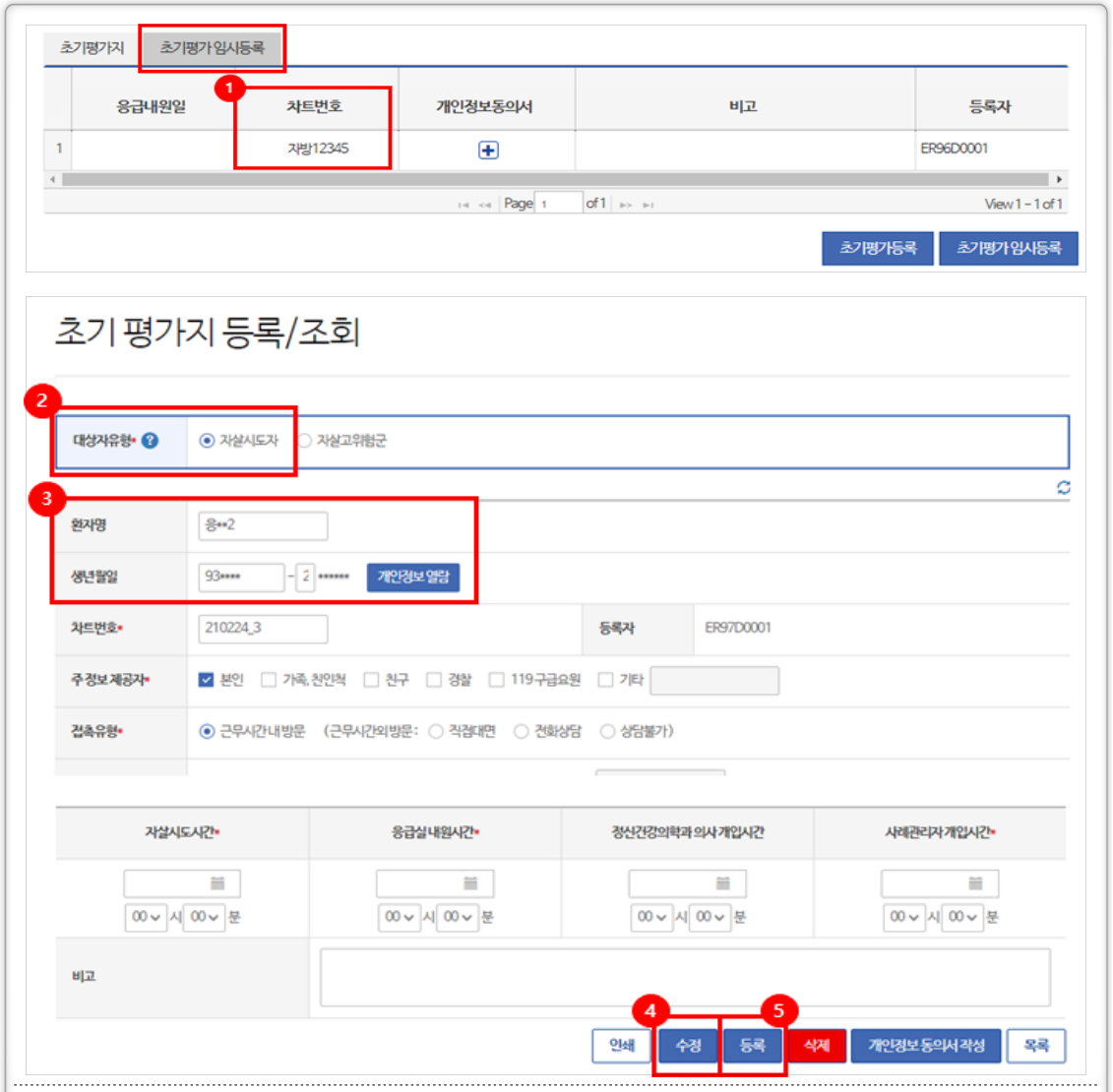

❶ [초기평가 임시등록] 탭에서 초기평가지를 등록하려는 환자의 차트번호 클릭

❷ 수가 시범사업 적용 대상은 [대상자 유형-자살시도자]만 가능

❸ 수가 시범사업 적용 대상만 입력

* **<u>개인정보 동의서가 작성 안 된 경우</u>**, 수가 시범사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과 동일하게 환자명과 생년월일을 제외한 초기평가지 입력

❹ 추가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클릭

❺ 초기평가지 작성을 완료한 경우 [등록] 클릭

* 초기평가지 필수입력 항목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록] 불가, [수정] 클릭 후 임시등록 가능

마) 심층평가지 등록

• **관련서식 : [별지 제4호]**

[대상자 정보-초기평가지] 클릭 후 초기평가 리스트 중 [심층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환자에 해당하는 심층평가 항목의 [플러스] 표시 클릭

❶ [초기평가지]에 작성된 정보는 자동 불러오기 반영

❷ 심층평가 일시(**심층평가료** 시행일자 동일) 기록

❸ 정신건강의학과 평가 결과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시행한 평가결과를 사례관리자가 SPEDIS에 작성 가능

❹ [심층평가지] 필수입력 항목 모두 입력 후 등록 클릭

* 필수입력 항목 : 현재 자살사고, 동반자살, 향후 자살계획, 자살시도 동기, 자살시도의 진정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의뢰, 추정진단,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개입시간, 정신건강의학과 평가 결과, 평가 의사

초기평가지 및 심층평가지 작성 지침

- 차트번호 : 병원 차트번호(병록번호)와 동일하게 작성
- 의료보장 : 건강보험,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으로 체크 된 경우에만 수가 신청 가능
- 응급실 조치결과 : 응급실에서 거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전원 간 경우 [전원-응급실사업 수행병원 전원]으로 체크 후 해당 병원명 기록
- 자살시도 시간, 응급실 내원 시간 : 의뢰받은 환자의 경우 해당 병원에서 작성한 자살시도 시간 및 응급실 내원 시간이 자동으로 입력되며, 전원으로 응급실을 통해 접수된 경우 해당 시간으로 응급실 내원 시간을 수정
- 정신건강의학과 평가결과 : 심층평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실시한 평가결과를 기록, 평가의사 또는 사례관리자가 입력 가능

바) 사례관리 계획서 등록

- 심층평가 완료 후 등록가능
-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내원 후 응급관찰 의뢰 시 거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서 등록 가능

• **관련서식 : [별지 제5호]**

[대상자 정보-초기평가지] 클릭 후 초기평가 리스트 중 사례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환자에 해당하는 사례관리계획서 항목의 [플러스] 표시 클릭

❶ 사례회의 실시(**사례관리 계획수립료** 시행)일자

❷ 수퍼바이저 기록 : 심층평가를 실시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부)센터장 등

❸ 응급실 내원 당시 정보, 주호소 문제, 사후관리 계획 등을 기록

❹ 수퍼바이저의 피드백 내용을 기록

❺ 사례관리계획서 항목이 모두 입력된 경우 등록 클릭

사) 응급관찰 기록지 등록(거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 심층평가가 진행된 경우에 한하여, 최대 3개까지 등록 가능

• **관련서식 : [별지 제6호]**

[대상자 정보-초기평가지] 클릭 후 초기평가 리스트 중 응급관찰 기록지를 작성하고자 하는 환자에 해당하는 [응급관찰 기록지] 항목의 [플러스] 표시 클릭

❶ 응급관찰을 실시한 일(**응급관찰관리료** 시행일자) : 00시 00분부터 23시 59분까지 작성 가능

*24시를 기준으로 새로운 [응급관찰 기록지] 작성

❷ 담당 주치의 성명 기록

❸ 심층평가 결과 및 응급실 진찰 소견을 바탕으로 응급관찰 사유 기록

❹ [응급관찰 기록지] 항목 모두 입력 후 등록

아) 응급관찰 의뢰(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 **관련서식 : [별지 제3-1호]**

[대상자 정보-초기평가지] 클릭 후 초기평가 리스트 중 [응급관찰 의뢰]를 진행할 환자에 해당하는 거점의뢰 항목의 [플러스] 표시 클릭

❶ 직책(예: 사례관리자) 작성, 연락처는 가입 정보로 자동입력 되나 연락 가능한 번호로 수정 가능

❷ 환자 본인 연락처 또는 보호자 연락처 중 1개 이상 필수입력

❸ 응급실 내원 당시 상황 및 주요 조치 내용, 현재 환자 상태, 의뢰 사유, 심층평가 결과 (필수) 기록

❹ 연계기관명 선택

❺ [의뢰서] 항목 모두 입력 후 경우 [저장] 클릭, [저장]이 된 후 [의뢰] 버튼 활성화

❻ 의뢰서 전송을 원할 경우 [의뢰] 클릭

자) 개인정보 열람

- 환자명과 생년월일은 등록 후 일부가 *로 표시되며,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확인 가능

❶ [개인정보 열람] 클릭 후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 진행

❷ 본인인증 완료 후 환자명, 생년월일 확인 가능

차) 의뢰 수락

- 일반응급의료기관에서의 의뢰 및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서의 응급관찰 의뢰 수락 절차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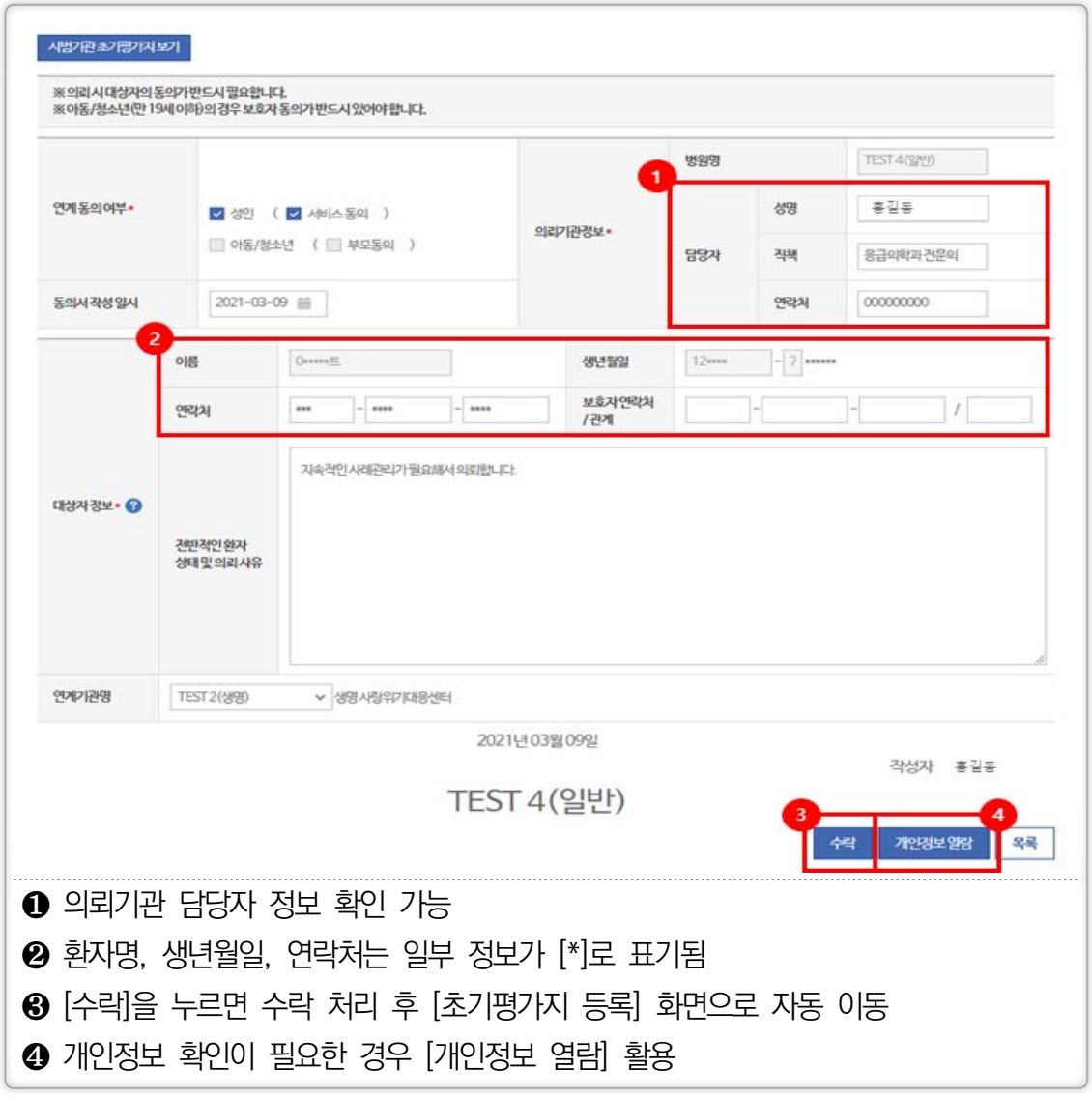

❶ 의뢰기관 담당자 정보 확인 가능

❷ 환자명, 생년월일, 연락처는 일부 정보가 [*]로 표기됨

❸ [수락]을 누르면 수락 처리 후 [초기평가지 등록] 화면으로 자동 이동

❹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열람] 활용

제5장

시범사업 준수사항 등

제5장 시범사업 준수사항 등

1 시범 기관 준수사항

가. 요양급여 안내

- **(시범사업 및 요양급여 안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시범사업에 참여 대상자(자살시도자 및 보호자)에게 시범사업의 내용, 본인 부담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적절히 안내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징구)**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시범사업 참여 희망 대상자에게 사업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보관

나. 자료제출의 의무

- 보건복지부 및 심평원이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여 관련 자료요청 시 지체없이 제출

다. 연구과제 참여 협조 의무

- 보건복지부 또는 심평원이 시범사업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여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에게 연구진으로 연구 참여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

라.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요구 및 보관

-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 받아 보관

마. 제재조치 등

-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급여기준을 위반하여 관련 수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를 공단에 반환
- 착오,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수가는 즉각 반환
- 공단은 위 사항에 대한 확인점검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양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련 진료비 등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2 시범 기관 평가

가. 평가 개요

- **(주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평가를 수행하도록 의뢰받은 연구진
- **(시기)** 시범사업 종료 후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종료 전이라도 할 수 있음

* 본인부담금 면제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시범사업 시행 1년 뒤 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중간보고 필요

나. 평가 내용

1) 시범사업 효과 및 수용성 평가

- 시범사업 실적 파악 및 진료행태 변화 분석
- 시범기관 및 환자 참여도 등을 파악하여 시범사업의 수용성 평가

2) 사업모형의 타당성 및 확대 가능성 평가

- 시범 수가 수준 및 보험자 · 환자 부담 수준의 타당성 평가
- 서비스 제공자의 제공 행태변화 등을 분석하여 수가모형의 확대적용 가능성 평가
- 국민 의료비 및 환자 부담에 미칠 영향평가

다. 평가 방법

- 요양급여의 청구·지급자료 등 활용하여 서비스 이용 현황 분석
- 시범 기관, 의료인 및 환자 대상 인터뷰 또는 설문 조사 실시
- 기타 시범사업 평가를 위해 필요 시 시범 기관 방문

라. 평가 관련 자료제출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수가 모니터링 등과 관련하여 진료기록부, 진료비 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때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함

제6장

별지서식 모음

제6장 별지서식 모음

[별지 제1호 서식] 일반응급의료기관 초기평가지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초기평가지

환자명			
차트번호			
생년월일	000000-0 (생년월일과 성별까지 입력)		
의료보장	○ 건강보험 ○ 의료급여1종 ○ 의료급여2종		
동반 내원자	□ 가족/친인척 □ 친구 □ 환자혼자 □ 경찰 □ 구급대원 □ 자원봉사자 □ 사회복지사 □ 종교단체교우 □ 행인 □ 직장동료 □ 이웃주민 □ 기타( )		
주 정보 제공자	○ 본인 ○ 가족, 친인척 ○ 친구 ○ 경찰 ○ 119 구급요원 ○ 기타( )		
자살시도 방법	약물음독(□ 진통제 □ 진정제/항정신병약제/수면제 □ 항우울제 □ 기타 약물(내용:)) * 복용 약물(약품명1: 2: 3:) 농약음독(□ 제초제 □ 살충제 □ 기타(내용:)) 가스중독(□ 일산화탄소 □ 기타(내용:)) * 가스 흡입 구입경로 (□ 대형마트 □ 편의점 □ 동네슈퍼 □ 인터넷 □ 기타(내용:)) □ 기타 화학물질(화학물질 중독, 자연독성 물질)(내용:) □ 목맴 □ 물(익사) □ 총화기(총기류 등) □ 분신 □ 둔기/예기(손목 긋기, 다른 부위의 자상 등) □ 추락 (내용:) □ 자동차/기차 □ 기타 자살시도 방법(내용:)		
동반 손상 진단명 (ICD 10, S, T code)	**진단명**	**ICD-10, S, T code**	
내원시 의식 수준	○ A ○ V ○ P ○ U	**활력 징후**	SBP( ) DBP( ) HR( ) RR( ) BT( )
의학적 치명도	○ 신체적 손상이 없거나 매우 경미 ○ 경미한 신체적 손상 ○ 보통의 신체적 손상 (의학적인 주의 필요)	○ 어느 정도 심각한 신체적 손상; 입원 및 경우에 따라서 집중적인 치료 요구 ○ 심각한 신체적 손상; 입원과 함께 집중적인 치료 요구 ○ 사망	

<table>
<tr><td>자살시도 장소</td><td colspan="3">○ 자택 ○ 학교/교육시설 ○ 직장/사무실 ○ 숙박시설 ○ 차량
○ 집단거주시설 ○ 의료관련 시설 ○ 상업시설 ○ 야외/바다/강 ○ 공공시설
○ 기타( ) ○ 미상</td></tr>
<tr><td>자살시도 당시 음주 여부</td><td>○ 음주 ○ 비음주</td><td>현재 자살사고</td><td>○ 없음 ○ 있음 ○ 면담불가</td></tr>
<tr><td rowspan="4">응급실 조치결과</td><td>귀가</td><td colspan="2">○ 증상이 호전되어 귀가 ○ 말기질환으로 귀가 ○ 가망 없는 퇴원
○ 자의 퇴원 ○ 기타 다른 상태로 귀가</td></tr>
<tr><td>전원</td><td colspan="2">○ 상급병원 전원 ○ 1,2차 의료기관 전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 전원 ○ 응급실 사업 수행병원 전원
○ 장기시설로 전원 ○ 환자 사정으로 전원 ○ 기타 다른 사유로 전원</td></tr>
<tr><td>입원</td><td colspan="2">○ 일반병동 ○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 중환자실 ○ 수술실 ○ 기타</td></tr>
<tr><td>사망/기타</td><td colspan="2">○ 사망 ○ 도주 ○ 기타(내용:)</td></tr>
<tr><td>퇴실진단코드</td><td colspan="3"></td></tr>
<tr><td>자살시도 시간</td><td colspan="3"></td></tr>
<tr><td>응급실 내원 시간</td><td colspan="3"></td></tr>
<tr><td>비고</td><td colspan="3"></td></tr>
</table>

[별지 제2호 서식] 일반응급의료기관 개인정보 동의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병원은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참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수집되는 모든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사업참여 통계분석 및 정책연구에 활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항목	수집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의료보장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운영기간 (사업 시행 및 연구기간 포함)**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나.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 귀하는 위의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보건복지부	사업 총괄 및 운영, 사업관리 및 평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의료보장, **병력정보(의료기관명, 자살시도 방법, 자살시도 장소, 동반 손상 진단명, 내원 시 의식 수준, 응급실 내원일자, 자살시도 일자 등)**	**사업 운영기간 (시범사업 시행 및 연구기간 포함)**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구)중앙자살예방센터)	사업 운영 및 평가		
연계의료기관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관련 급여비용 심사 및 지급	성명, 의료보장, **병력정보(의료기관명, 자살시도 방법, 자살시도 장소, 동반 손상 진단명, 내원 시 의식 수준, 응급실 내원일자, 자살시도 일자 등),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라. 고유식별정보 처리 고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근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관련 급여비용 심사 및 지급	**주민등록번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마. 미성년자(만14세 미만)의 개인정보 동의 여부

법정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출요망

☞ 본인은 환자(성명:)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 년 월

성 명 (서명 또는 인)

( )**병원** 귀중

[별지 제2-1호 서식] (거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개인정보 동의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병원은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참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수집되는 모든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사업참여 통계분석 및 정책연구에 활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항목	수집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의료보장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운영기간 (사업 시행 및 연구기간 포함)**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나.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 귀하는 위의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보건복지부	사업 총괄 및 운영, 사업관리 및 평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의료보장, **병력정보(의료기관명, 자살시도 방법, 자살시도 장소, 동반 손상 진단명, 내원 시 의식 수준, 응급실 내원일자, 자살시도 일자 등)**	**사업 운영기간 (시범사업 시행 및 연구기간 포함)**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사업 운영 및 평가		
연계의료기관 (거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응급관찰 시행 ※ 응급관찰 의뢰 시에만 제공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관련 급여비용 심사 및 지급	성명, 의료보장, **병력정보(의료기관명, 자살시도 방법, 자살시도 장소, 동반 손상 진단명, 내원** 시 의식 **수준, 응급실 내원일자, 자살시도 일자 등),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라. 고유식별정보 처리 고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근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관련 급여비용 심사 및 지급	**주민등록번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마. 미성년자(만14세 미만)의 개인정보 동의 여부

법정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출요망

☞ 본인은 환자(성명:)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 년 월

성 명 (서명 또는 인)

( )**병원**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일반응급의료기관 의뢰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의뢰

동의서 작성 일시		의뢰기관정보	병 원 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 / 관계	
연계기관 명	( )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작성자 ○○○ (인)

○○○○○ 병원

[별지 제3-1호 서식]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의뢰서(응급관찰 의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요양급여의뢰서

의뢰 기관 정보	병 원 명		
	담당자	성명	
		직책	
		연락처	

대상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000000-0*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 / 관계	
전반적인 환자 상태 및 의뢰 사유	*- 응급실 내원 당시 상황 및 주요 처치 내용* *- 현재 환자 상태* *- 의뢰 사유* *- 심층평가 결과*			
연계기관 명	(　　)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2021 년　○ 월　○ 일

작성자 ○○○ (인)

○○○○○ 병원

[별지 제4호 서식] (거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심층평가지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심층평가지

환자명			
차트번호			
생년월일	000000-0 (생년월일과 성별 만 입력)		
의료보장	○ 건강보험 ○ 의료급여1종 ○ 의료급여2종		
동반 내원자	□ 가족/친인척 □ 친구 □ 환자혼자 □ 경찰 □ 구급대원 □ 자원봉사자 □ 사회복지사 □ 종교단체교우 □ 행인 □ 직장동료 □ 이웃주민 □ 기타( )		
주 정보 제공자	○ 본인 ○ 가족, 친인척 ○ 친구 ○ 경찰 ○ 119 구급요원 ○ 기타( )		
나이	만(세)	**성별**	○ 남 ○ 여
교육정도	○ 무학 ○ 초졸 ○ 중졸 ○고졸 ○ 대졸 ○ 대학원이상 ○ 미상	**혼인상태**	○ 미혼 ○ 기혼 ○ 동거 ○ 별거 ○ 이혼 ○ 사별
종교	○ 무교 ○ 개신교 ○ 천주교 ○ 불교 ○ 기타( )		
직업	○ 의회의원/고위임직원/관리자 ○ 전문직/기술직 ○ 사무직 ○ 서비스/판매 ○ 농/어업 ○ 숙련/기능 ○ 단순노무 ○ 군인 ○ 학생/재수생 ○ 주부(집안일/가사) ○ 무직 ○ 기타( )		
동거인/돌봐주는 사람	○ 없음 ○ 동거인 있음 ○ 돌봐주는 사람 있음 관계(□ 배우자 □ 자녀 □ 부 □ 모 □ 조부 □ 조모 □ 친구/동료 □ 기타( ))		
가족관계	부 : ○ 생존 ○ 사망 모 : ○ 생존 ○ 사망 형제, 자매: 남( )명, 여( )명, (본인포함) 중 ( )째, 자녀: 남( )명, 여( )명		
신체병력	○ 건강하였음 ○ 최근 급성질환 ( ) ○ 일상생활에 지장이 별로 없는 만성질환 또는 지속되는 장애 ( ) ○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만성질환 또는 지속되는 장애 ( )		
월가구소득	○ 50만원 이하 ○ 51~100만원 ○ 101~150만원 ○ 151~200만원 ○ 201~250만원 ○ 251~300만원 ○ 301만원 이상		
자살시도 방법	약물음독(□ 진통제 □ 진정제/항정신병약제/수면제 □ 항우울제 □ 기타 약물(내용:)) * 복용 약물(약품명1: 2: 3:) 농약음독(□ 제초제 □ 살충제 □ 기타(내용:)) 가스중독(□ 일산화탄소 □ 기타(내용:)) * 가스 흡입 구입경로 (□ 대형마트 □ 편의점 □ 동네슈퍼 □ 인터넷 □ 기타(내용:)) □ 기타 화학물질(화학물질 중독, 자연독성 물질)(내용:) □ 목맴 □ 물(익사) □ 총화기(총기류 등) □ 분신 □ 둔기/예기(손목긋기, 다른 부위의 자상 등) □ 추락 (내용:) □ 자동차/기차 □ 기타 자살시도 방법(내용:)		

<table>
<tr><td rowspan="3">동반 손상 진단명
(ICD 10, S, T code)</td><td>진단명</td><td colspan="2">ICD-10, S, T code</td></tr>
<tr><td></td><td colspan="2"></td></tr>
<tr><td></td><td colspan="2"></td></tr>
<tr><td>내원시 의식 수준</td><td>○ A ○ V ○ P ○ U</td><td>활력 징후</td><td>SBP( ) DBP( ) HR( )
RR( ) BT( )</td></tr>
<tr><td>의학적 치명도</td><td>○ 신체적 손상이 없거나 매우 경미
○ 경미한 신체적 손상
○ 보통의 신체적 손상
(의학적인 주의 필요)</td><td colspan="2">○ 어느 정도 심각한 신체적 손상;
입원 및 경우에 따라서 집중적인 치료 요구
○ 심각한 신체적 손상; 입원과 함께 집중적인 치료 요구
○ 사망</td></tr>
<tr><td>자살시도 장소</td><td colspan="3">○ 자택 ○ 학교/교육시설 ○ 직장/사무실 ○ 숙박시설 ○차량 ○ 집단거주시설
○ 의료관련 시설 ○ 상업시설 ○ 야외/바다/강 ○ 공공시설 ○ 기타( )
○ 미상</td></tr>
<tr><td>자살 당시 음주 여부</td><td>○ 음주 ○ 비음주</td><td>현재 자살사고</td><td>○ 없음 ○ 있음 ○ 면담불가</td></tr>
<tr><td>자살 당시 계획 유무</td><td>○ 계획된 것 ○ 충동적인 것</td><td>유서</td><td>○ 없음 ○ 있음</td></tr>
<tr><td>동반자살</td><td colspan="3">○ 없음
○ 있음 (□ 배우자 □ 자녀 □ 부 □ 모 □ 조부 □ 조모 □ 지인(친구/동료)
□ 인터넷(자살사이트 등) □ 소셜네트워크 □ 기타( ))
○ 모름</td></tr>
<tr><td>향후 자살계획</td><td colspan="3">○ 없음
○ 있음(○ 1주일 내 ○1주일~1개월 내 ○ 1개월~6개월 내 ○ 6개월 이상 ○ 알 수 없음)</td></tr>
<tr><td>도움 요청</td><td colspan="3">○ 도움을 요청하지 않음 ○ 실마리를 줌
○ 도움 요청(○ 시도 전 ○ 시도 후) (관계:)</td></tr>
<tr><td>자살시도 동기</td><td colspan="3">□ 정신장애 혹은 증상과 직접 관련 있다 (예: 환청, 망상, 우울, 초조 등)
□ 대인관계의 스트레스/갈등 (내용:)
□ 성적, 입시, 취업, 승진 등 학교, 직장 관련 (내용:)
□ 경제적 문제 (내용:)
□ 신체적 질병 (내용:)
□ 주변 사람들의 죽음이나 심한 질병 (내용:)
□ 학대: 신체적, 성적 학대 혹은 폭력 (내용:)
□ 법적 문제
□ 외로움/고독
□ 기타 (내용:)
□ 말다툼, 싸움이나 야단맞음 (내용:)
□ 기타 충격적인 사건 (내용:)</td></tr>
<tr><td>자살시도의 진정성
(평가자 판단)</td><td colspan="3">○ 정말 죽으려고 했으며, 그럴 만한 방법을 선택했다.
○ 죽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실제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 도움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지, 정말 죽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 기타 ( )
○ 알 수 없음/평가 불가</td></tr>
</table>

과거 자살시도	○ 없음 ○ 있음(횟수( ))	**과거 자살시도 연령(만)**	첫 자살시도 : 만( )세 최근 자살시도 : 만( )세
과거 자살시도 방법	□ 음독 □ 손목 자해 □ 찌름 □ 익수 □ 목맴 □ 질식 □ 투신 □ 총살 □ 기타( ))		
과거 자살시도 후 신체적 치료	○ 병원 방문 ○ 병원 방문하지 않음	**과거 자살시도 후 정신건강의학적 치료**	○ 면담 혹은 치료 받음 ○ 면담 혹은 진료 권유받았으나 받지 않음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권유받지 않음
정신건강의학적 치료력	○ 진료 받은 적은 없지만 정신건강의학과적 문제 있어 보임 ○ 자살시도 이전에 정신건강의학적 문제없어 보임 ○ 있지만 현재는 중단 ○ 현재 치료 중 - 복용 중인 정신건강의학과 약물 있음 ○ 현재 치료 중 - 복용 중인 정신건강의학과 약물 없음 (첫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시기: 년 월) / (마지막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시기: 년 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력	○ 입원력 있음 (최근 퇴원 일자: 년 월 일) ○ 없음		
현재 복용 중인 약물	○ 있음 (□항불안제/수면제 □항우울제 □항정신병약물 □ 기분조절제 □기타( )) ○ 없음 ○모름		
정신건강의학과 가족력	○ 없음 ○ 있음 (환자와의 관계:) * 배우자, (손)자녀, 부 모, 조부, 조모, 기타 중에서 작성	**자살 가족력**	○ 없음 ○ 있음 (환자와의 관계:) * 배우자, (손)자녀, 부 모, 조부, 조모, 기타 중에서 작성
자살시도 인식	○ 부인 ○인정 ○ 면담불가		
과거 사후관리 서비스	동의(○ 보호자 ○ 대상자 ○ 모두) 거부(○ 보호자 ○ 대상자 ○ 모두) ○ 안내받은 적 없음		
과거 서비스 거부 사유	□ 개인정보 유출 □ 정신건강의학적 문제 부정 □ 상담이 부담스러움 □ 연고지 문제 □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음 □ 기타( )		
추정진단	□ 불안장애 □ 신체형 장애 □ 우울장애 □ 양극성장애 □ 조현병 혹은 다른 정신병적 장애 □ 물질장애( ) □ 정신지체, 학습장애, 발달장애 □ 치매, 기질성 정신장애 □ 적응장애 □ 인격장애( ) □ 진단불가( ) □ 미개입( ) □ 기타(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의뢰	○ 의뢰함 의뢰불가능(○ 임상적으로 불필요 ○ 환자거부 ○ 의식저하 ○ 사라짐 ○ 사망 ○ 기타( ))		
응급실 퇴원 후 계획	**정신건강의학과 F/U**	○ 동의 ○ 입원 ○ 필요없음 ○ 거부	
	정신건강의학과 F/U 거부사유	○ 병식없음 ○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 ○ 경제적/비용 문제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거부감/편견 ○ 의료기관 이용 불편 ○ 기타( )	
	사후관리 서비스	동의(○ 보호자 ○ 대상자 ○ 모두) 거부(○ 보호자 ○ 대상자 ○ 모두)	
	서비스 거부 사유	□ 개인정보 유출 □ 정신건강의학과적 문제 부정 □ 상담이 부담스러움 □ 연고지 문제 □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음 □ 기타( )	

응급실 퇴원 후 계획	의료비 지원 여부	○ 예 ○ 아니오
	의료비 지원 출처	□ 보건복지부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 기타( )
	의료비 지원 총액(원)	보건복지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기타(₩)
	의료비 지원 지급일	보건복지부(년 월 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년 월 일) 기타(년 월 일)
이번 자살시도에 대한 의학적 결과	귀가	○ 증상이 호전되어 귀가 ○ 말기질환으로 귀가 ○ 가망없는 퇴원 ○ 자의 퇴원 ○ 기타 다른 상태로 귀가
	전원	○ 상급병원 전원 ○ 1,2차 의료기관 전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 전원 ○ 응급실 사업 수행병원 전원 (기관명:) ○ 장기시설로 전원 ○ 환자 사정으로 전원 ○ 기타 다른 사유로 전원
	입원	○ 일반병동 ○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 중환자실 ○ 수술실 ○ 기타
	사망/기타	○ 사망 ○ 도주 ○ 기타(내용:)
자살시도 시간		
응급실 내원 시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개입시간		
사례관리자 개입시간		
비고		
정신건강의학과 평가 결과		
평가 의사		

[별지 제5호 서식] (거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사례관리 계획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사례관리 계획서

성명		**차트번호**	
응급실내원일시		**사례관리자***	
사례회의 일자*		**정신과 전문의***	
사례 요약*	*- 응급실 내원당시 정보* *- 주 호소 문제* *- 사후관리 계획*		
수퍼비전 내용*			
사후관리 계획 *	☐ 심리적지지/안정 ☐ 교육 ☐ 자원 연결 ☐ 기타		

[별지 제6호 서식] 거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응급관찰 기록지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응급관찰기록지

성명		**차트번호**	
응급실내원일시		**사례관리자***	
관찰 일시*	0000년 0월 0일 00시 00분 ~ 00시 00분		
담당의사*		**담당간호사**	
응급관찰 사유*	*- 응급관찰 필요 사유 기록(담당의사 작성)*		
주요 처치 내용*	*- 주요 처치 내용 기록*		
조치 결과*	*- 응급관찰 종료 후 조치 결과*		

별첨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별첨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1 사업대상 및 시범 기관

Q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환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응급실로 내원한 자해·자살시도자(중단된 자살시도자 포함)가 대상입니다.

※단, 수사·재판 등 고의적 자해행위가 명확히 밝혀지는 경우 사후 제한 가능

Q 건강보험 환자만 대상인가요?

- 건강보험(차상위 포함) 가입자·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

※(제외대상) 보훈 환자

Q 거주지가 인천광역시가 아닌 환자도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한가요?

-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사후관리서비스에 등록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병원 기반 사후관리 종료 후 지역서비스 연계 시에는 환자의 거주지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합니다.

Q 자살 시도로 이미 입원 중인 환자도 시범사업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시범사업 착수 전 자살 시도로 입원 중이거나, 외래치료 중인 환자는 본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시범 기관의 참여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법 제2조제5호),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동법 제35조의2)
  - 인천광역시 내 응급의료기관 등 전수 참여

Q 시범 기관의 참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 심층평가 및 사후관리 담당 의료기관(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은 정신건강의학과및 응급의학과 의료진, 사례관리자로 사례관리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사례관리자 자격조건)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 일반응급의료기관(기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가 아닌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가 없어도 참여할 수 있으며, 사례관리자를 별도로 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살시도자 내원 시 초기평가 및 환자의뢰는 기존 응급실 인력이 담당

Q 거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지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기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중에서 ① 24시간 운영기관이면서, ② 정신과 평가가능 의사가 24시간 상주하고, ③ 응급관찰병상을 확보한 의료기관이 해당합니다.

  ※24시간 운영기관: 사례관리자 최소 5인 이상 고용, 자살시도자 24시간 대응

2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

가. 공통 사항

Q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료**(의뢰환자관리료, 자살시도자 응급관찰 관리료, 심층평가료, 사례관리 계획수립료)**는 모든 시범 기관에서 산정할 수 있나요?**

- 시범 기관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산정 가능한 수가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 (일반응급의료기관) 의뢰환자관리료
  -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심층평가료, 사례관리 계획수립료
  - (거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자살시도자 응급관찰 관리료, 심층평가료, 사례관리 계획수립료

Q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료"는 몇 회 산정 가능한가요?**

- "자살시도자 응급관찰 관리료"를 제외하고, 각 수가는 1회 산정 가능합니다.

  ※ "자살시도자 응급관찰 관리료"는 1일 1회씩 최대 3회 산정 가능합니다.

Q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료"는 응급실에서만 산정할 수 있나요?**

-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료"는 자살시도자의 시범 기관 응급실 내원을 전제로 이루어지며, 수가마다 산정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의뢰환자관리료	일반응급의료기관 응급실에서 시행한 경우
자살시도자 응급관찰 관리료	거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응급실에서 시행한 경우
심층평가료/ 사례관리 계획수립료	• 일반응급의료기관에서 연계된 경우 – (거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외래에서 시행한 경우 – (거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입원 중 시행한 경우 – (거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응급실에서 시행한 경우 • (거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응급실로 바로 내원한 경우 – (거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응급실에서 시행한 경우 – 응급실로부터 연이어 입원이 발생하여 입원 중 시행한 경우 – 응급실 퇴원 후 외래에서 시행한 경우

Q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료"는 각종 야간·공휴 등 가산을 적용할 수 있나요?

-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료" 각 수가에는 야간·공휴 등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료"는 별도로 시행한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등과 동시에 산정할 수 있나요?

- (진찰료) 환자에 대한 별도의 진찰행위가 이루어졌으면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검사 및 처치료)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1편 제2부 각 장의 행위 분류 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합니다.
- 반드시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료"(시범사업 내역)와 검사, 투약, 처치 등(비시범사업 내역)의 명세서는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Q 응급실 내원 후 입원 치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층평가 및 사례관리 계획수립을 매일 반복 시행한 경우 관련 수가를 산정할 수 있나요?

- 동일 환자에 대한 “심층평가료”, “사례관리 계획수립료”는 입원 기간 각 1회씩만 산정 가능합니다.

Q 자살을 재시도하여 응급실에 다시 내원한 경우 동일 과정에 대한 수가 산정이 가능한가요?

- 동일 과정의 서비스를 재적용할 수 있습니다.

Q 일반응급의료기관에서 지역서비스 직접연계 시 수가를 산정할 수 있나요?

- 일반응급의료기관에서 심층평가 및 사후관리 담당 의료기관(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으로 환자를 연계한 경우에만 “의뢰환자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Q 사례관리, 지역서비스 연계와 관련한 수가 산정은 할 수 없나요?

- 사례관리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고용인력)가 수행하는 병원 기반 단기 사례관리 및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관련 수가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나. 의뢰환자관리료

Q "의뢰환자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의뢰환자관리료는 '일반응급의료기관'에서만 산정 가능합니다.
- 일반응급의료기관 응급실로 내원한 자살시도자에 대해 초기평가를 실시하고, 사례관리 필요성 및 연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거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스템(SPEDIS)에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초기평가지(별지 제1호 서식)',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일반응급의료기관 의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입력한 경우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응급상황시 구두동의 또는 초기평가 후 연계시도한 경우에도 의뢰환자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응급상황으로 전원이 필요하여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구두동의로 (거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응급실로 연계가 이루어진 경우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초기평가지(별지 제1호 서식)',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의뢰(별지 제3호 서식)'를 입력하며, 서면동의가 불가능한 사유를 초기평가지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초기평가를 실시하고 (거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연계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거부한 경우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초기평가지(별지 제1호 서식)'를 입력하며, 초기평가지 [비고]란에 참여 거부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Q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의 “의뢰료”와 중복산정할 수 있나요?

- 중복산정할 수 없습니다.

Q 일반응급의료기관에서 초기평가 후 사후관리서비스에 동의한 환자가 실제 사후관리에 참여해야 “의뢰환자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것인가요?

- 일반응급의료기관 내원 당시 심층평가 및 사후관리 담당 의료기관(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으로 연계해 사후관리서비스에 동의한 경우라면 실제 서비스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의뢰환자관리료” 산정은 가능합니다.
- “의뢰환자관리료”는 환자가 진료기록 등 개인정보를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심층평가료

Q "심층평가료"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심층평가료는 사례관리를 시행하는 '거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및 '생명사랑위기센터'에서 산정 가능합니다.
- 자살시도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정신과적 평가(심층평가)를 시행하고,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스템(SPEDIS)에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심층평가지(별지 제4호 서식)'를 입력한 경우 산정할 수 있습니다.

Q "심층평가료"는 외래진찰료와 중복산정할 수 있나요?

- 심층평가 목적 이외의 정신과적 진료를 시행한 경우 산정 가능합니다.

Q 외래에서 심층평가를 시행할 경우 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은 별도 산정할 수 있나요?

- 건강보험 대상자에 한하여 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별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사례관리 계획수립료

Q "사례관리 계획수립료"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사례관리 계획수립료는 사례관리를 시행하는 '거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및 '생명사랑위기센터'에서 산정 가능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및 사례관리자가 초기평가, 심층평가 및 면담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례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스템(SPEDIS)에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사례관리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입력한 경우 산정할 수 있습니다.

Q 사례관리 계획수립은 누가 시행해야 하나요?

- 심층평가를 시행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및 사례관리팀이 함께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Q 사례관리 계획수립은 초기평가 및 심층평가 없이 시행할 수 있나요?

- 사례관리 계획수립은 초기평가 및 심층평가, 면담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반적인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초기평가 및 심층평가 시행 후 사례관리 계획수립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마. 자살시도자 응급관찰 관리료

Q "자살시도자 응급관찰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자살시도자 응급관찰 관리료는 '거점 생명사랑위기센터'에서 산정하며, 자살시도자 응급관찰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자)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 결과

- 1·2등급(중증응급환자), 3등급(중증응급의심환자) 환자

(시설) 응급의료센터 내 독립된 공간으로 1병상을 예비병상으로 확보

(인력)

- 상근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주간), 전공의(야간, 주말, 공휴일)가 병원 내 상주
- 사례관리팀 24시간 응급실 내 또는 응급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

- 응급관찰 시행 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스템(SPEDIS)에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응급관찰 기록지(별지 제6호 서식)'를 입력한 경우 산정할 수 있습니다.

Q "자살시도자 응급관찰 관리료"는 최대 몇 회까지 산정 가능한가요?

- 1일 1회씩 최대 3회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자살시도자 응급관찰 관리료"는 응-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와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 단, 응-5 응급전용중환자실 관리료는 별도 산정 불가합니다.

- 수가 산정횟수와 같게 1일 1회 각각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응급관찰 기록지(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등록하여야 합니다.

Q 자살시도자에게 시행한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응급의료행위 가산은 산정할 수 있나요?

- 자살시도자에게 실시한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및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행위산정지침에 명시된 각종 가산에 대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3 청구방법

Q 시범사업 내역와 비시범사업 내역을 분리청구 하여야 하나요?

- 행위별 수가 적용 환자의 진료 내역은 시범사업내역과 비시범사업내역을 분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시범사업 명세서의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는 “S030”을 기재하고, 총 내원일수(입원일수)란에는 “0”으로 기재합니다.

※ 예) 동일 날 시범사업 내역과 비시범사업 내역이 모두 발생한 환자의 청구명세서

구 분	일반내역		상병내역
	명세서일련번호	총내원일수	내원일자
(명세서1) 비시범사업 명세서	00050	1	20210401
(명세서2) 시범사업 명세서	00051	0	20210401

Q 산정특례 환자의 경우,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료 청구시 특정기호 기재방법은 무엇인가요?

- 시범사업 청구명세서의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특정기호 “S030”만 단독으로 기재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거한 본인부담 경감에 해당하는 특정 기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Q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청구방법은 무엇인가요?

- 시범사업 내역의 명세서에는 공상구분자(4)를 삭제하여 청구합니다.
- 공상 구분자를 삭제하지 않아 명세서 지급불능이 된 경우, 공상 구분자(4)를 삭제하여 보완청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Q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참여환자가 신포괄수가 대상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시범 수가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대상자가 신포괄 시범기관에 신포괄 질병군으로 입원하는 경우 시범사업 내역은 입원 진료내역(원청구)과 분리하여 추가청구*(구분 코드: 2) 합니다.
- 관련 수가는 전액 비포괄 항목으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시범사업 명세서의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는 'S030'를 기재하고 총 내원일수란에는 "0"으로 기재합니다.

Q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경우, 신포괄수가제 청구방법은 무엇인가요?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이외의 진료 내역은 공상 구분자에 보훈자격을 기재하여 신포괄수가를 적용 후 원청구,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진료 내역은 공상 구분자에 보훈자격을 삭제하여 추가 청구합니다.

Q 응급상황시 구두동의로 연계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초기평가 후 연계시도하였으나 거부한 경우 의뢰환자관리료 청구방법은 무엇인가요?

- "01항 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 란에 기재하며,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특정기호 "S030"을 기재합니다.

  ※ 의료급여 정액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정액 명세서 "X항 81목(진찰료):란에 기재

-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에 '초기평가 시행일자(ccyymmdd)/연계하는 요양기관의 요양기호(12345678)/환자등록번호(SPEDIS에 입력된 차트번호)'를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예시1) 응급상황시 구두동의로 (거점)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12345678)로 시범사업 대상 환자(환자등록번호 326896)를 의뢰한 경우

항	목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X)	03 (81)	0001	1	ID010	19,630	1	1	19,63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T002		S030		
2		0001		JX999		20210810/12345678/326896		

(예시2) 초기평가 후 연계시도를 하였으나 환자(환자등록번호 326896)가 거부한 경우

- 연계하는 요양기관의 요양기호는 반드시 "00000000"을 기재합니다.

항	목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X)	03 (81)	0001	1	ID010	19,630	1	1	19,63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T002		S030		
2		0001		JX999		20210810/00000000/326896		

4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스템(SPEDIS)

Q SPEDIS 입력은 평가자만 가능한가요?

- 평가자와 입력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자가 명시되어야 하는 항목은 반드시 평가를 실시한 의사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Q SPEDIS 모바일 등 기타 기기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현재 SPEDIS는 데스크톱 외 핸드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시범사업 의뢰로 온 환자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서 별도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각 병원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게 되므로 시범사업 서비스에 동의 한 경우에도 각 병원에서 추가로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시범사업 서비스에 동의하는 않은 경우(수가신청 제외대상) 기존과 동일하며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는 별도로 기입하지 않습니다.

Q SPEDIS 필수항목이 누락될 경우 수가 신청은 불가한가요?

- 그렇습니다. 다만 (임시초기평가지 제외)SPEDIS 필수값 미입력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단계가 완료되지 않으며, 등록(저장)시 팝업창을 통해 누락 항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SPEDIS에서 수가청구 목록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 메뉴에서 '수가현황조회'에서 하단의 [수가현황조회]버튼을 누르면 팝업창으로 수가코드별 청구 가능한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의 체크박스 및 확인 버튼을 누르면 '수가현황조회'화면으로 전송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페이지는 수가청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각 병원에서 청구 대상목록와 완료목록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Q 시범 기관은 심평원에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별도의 현황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Q 시범사업 수가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에 분류된 시범사업 수가 전액을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합니다.

  ※사업 시행 1년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중간성과평가 후 연장 여부 논의 예정

Q 일반응급의료기관에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의뢰 시 의뢰되는 병원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 환자가 직접 사후관리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일반응급의료기관에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의뢰 환자가 심층평가를 위해 응급실로 방문해도 되나요?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방문을 권고하지만, 병원의 기존에 예약된 외래일정으로 인해 의뢰날짜로부터 연계 시까지 1주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응급실 방문도 가능합니다.

Q 병원 간 환자 전원을 의뢰할 때 수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나요?

- 응급관찰을 위해 즉시 전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응급의료기관에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환자의뢰 시 사전 문의는 불필요합니다.